

130



OECD
통계업무 편람
2002



637698



통 계 청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머 리 말

1996년 12월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지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동 기구 가입 이후 통계청 및 국내 각 기관들이 요청 통계를 성실히 제공함으로써 OECD 내에서 한국은 OECD가 요구하는 통계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OECD의 선진적 통계기법의 습득으로 우리나라의 통계수준도 질적·양적인 면에서 한층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나 통계제공이 기관별로 분산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한국의 전체적인 OECD 통계 제공체계 및 제공현황 등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 6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OECD의 통계 업무 전반에 대한 정리를 통해 향후 자료제공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OECD 통계 업무 편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OECD의 축적된 지식을 우리 경제·사회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OECD의 각종 통계 간행물과 국제회의에 대한 정보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본 편람의 발행이 국내통계작성 기관의 OECD 통계제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일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2년 11월

통계기획국장 정택환

차 례

I. OECD 통계업무	5
1. 개 요	7
2. 추진경과	8
3. OECD 통계업무 제공체계	9
II. OECD 요구통계 및 국내작성현황	13
1. OECD 통계제공의 근거	15
2. OECD 요구통계의 변천	15
3. OECD 통계의 국내제공현황	24
III. OECD 통계제공과 통계작성승인	29
1. 현황 및 문제점	31
2. 통계작성승인 제도	31
3. OECD 통계제공기관의 협조사항	33
IV. OECD 통계조직 및 활동현황	39
1. OECD 개황	41
2. OECD 통계국 현황 및 업무내용	51
3. OECD 통계국 이외의 통계업무 현황	55
V. OECD 발간 주요 통계간행물	59
1. 개 요	61
2. OECD 통계 간행물의 입수	61
3. OECD 통계 간행물의 활용	62
4. OECD 발간 주요 통계간행물	62

VI. OECD 주관 통계관련 주요 국제회의	69
1. 개 요	71
2. OECD 주관 통계관련 국제회의	72
VII. OLISnet 및 관련통계 소개	79
1. 개 요	81
2. OLISnet의 구성	81
3. OLISnet의 활용실태	82
4. OLISnet의 가입방법 및 절차	89
5. OLISnet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통계자료 목록	90
6. OLISnet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요 『Documents』	93
VIII. OECD 주요 현안	95
1. OECD의 전반적 이슈	97
2. 통계분야의 현안	97
부록 I. OECD 요구통계관련 관계기관회의	101
II. OECD 통계 부문별 개발계획 주요내용	117
III. 자료 및 메타데이터 수집(OECD의 미래전략)	123
IV. OECD 통계에 대한 품질 프레임웍	132
V. OECD 설립 협정	139
VI. OLISnet 관련 규정	158
참고문헌	162

표 및 그림 차례

<표2-1> 연도별 요구통계현황	16
<표2-2> OECD 요구통계 연도별 변천현황	17
<표2-3> 관계기관별 OECD 통계제공현황	26
<표2-4> 관계기관별 OECD 통계제공현황(영문)	27
<표3-1> OECD 제공통계 관련기관 현황	34
<표4-1> OECD 사무국 및 업무현황	46
<표4-2> OECD 분야별 예산 및 우리나라 분담금 현황	50
<표7-1> OLISnet 한국 가입기관 현황	84
<그림 4-1> OECD 조직도	49
<그림 4-2> OECD 통계국 조직도	54

I. OECD 통계업무

I. OECD 통계업무

1. 개요

-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OECD 가입이후 OECD 설립협정 (Convention 3조)¹⁾의 필요한 정보를 OECD에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각종 통계정보자료를 제공할 일반적 의무를 짐. 이에 따라 OECD가 요청하는 통계를 성실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여 왔고 이를 통하여 선진통계기준 등의 도입으로 국내 통계의 수준 향상 및 통계의 국제비교성을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됨. 또한 OECD에의 통계자료 제공은 단순히 일방적인 자료제공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한 소관 통계정보의 OECD내 선진국과의 교환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정보 활용 가능성을 높임.
- '94년 OECD 가입을 검토하며 입수한 OECD 통계목록은 80여종이었으나 실제 우리나라는 가입이후 '97년에는 63종의 통계제공을 요청받았고, 이후 5년동안 OECD 요구통계의 명칭과 종류 및 내용은 경제·사회환경의 변화 및 통계 수요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음.(Ⅱ장. OECD 요구통계 및 국내작성현황 참고)
- OECD의 통계조직은 내부적으로 분산형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OECD내에서도 각 회원국에 요청하는 통계내용에 대해 전체적인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는 효율적 통계 수집을 위해 중복적 통계요청 방지 및 통계 제공 체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1) 부록 V. OECD 설립협정 참조

- 국내의 경우 각종 OECD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각 주무기관 및 협조기관 제공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관련 업무의 이해와 지속적인 통계업무의 발전에 있어 제한적인 상황임.
- '98 「OECD 통계 종합 개발 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요구 통계에 대한 개발 및 통계 제공업무의 효율성 도모, 국내 통계제공 기관간의 조정과 긴밀한 협력이 요구됨.

2. 추진경과

- '92. 4. : OECD 각료이사회, 한국의 가입문제 협의
- '94. 2. : OECD 사무총장 “한국의 가입시기와 일정” 통보 요청
- '94. 6. : 제3차 OECD/제42차 ECE 통계기관장회의 참석
- '94. 7. : OECD 80여종의 통계목록·조사표일부(30종) 입수, 관련부처 배부
- '95. 7. : 31종의 OECD조사표 추가입수
- '95. 8. : OECD 통계국장 방한(한·OECD간 통계부문 협력 논의)
- '95.10. : OECD 통계평가단 방한 대비 국내 통계작성기관 1차 회의
- '95.11. : OECD 1차 통계평가단(10명) 방한, 국내작성기관과 실무협의
- '96. 2. : 국내 통계작성기관 2차 회의
(재경원, 통산부, 통계청 등)
- '96.10. : OECD 2차 통계평가단(2명) 방한, 국내작성기관과 실무협의
- '97. 6. : 21개부처 등 국내기관 제3차 회의
(OECD 통계업무추진계획 확정)

- '97.10. : 각 국내기관별 OECD통계작성현황표 작성 및 통계청 송부
- '97.12. : 각 기관 OECD통계개발계획(안)작성 및 통계청 송부
- '98. 4. : 각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간 업무 재협의 관계 기관회의
- '98. 6. : OECD통계개발계획 부처 송부 및 관련 내용확정
- '98.12. : 통계청 OECD 통계제공수룩집 발간, 관련기관 송부 ('98 이후 매년 작성, 관련기관 송부)

3. OECD 통계업무 제공체계

가. 개요

- 우리나라의 통계체계는 중앙통계작성기관인 통계청에서 56종의 국가 기본 통계의 생산 및 국내통계작성기관간의 조정을 맡고 있으며 각 해당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를 작성하는 분산형 통계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OECD에서 요청되는 통계 역시 해당 통계의 작성기관에서 요구 통계에 대한 개발 및 제공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분산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나. 각 기관별 역할

(1) 통계청의 역할

- 요청통계에 대한 자료 제공
 - 통계청에 요청된 통계에 대한 OECD 제공
- 제공자료에 대한 정보 제공
 - 통계청의 경우 중앙통계기관으로서 국내통계에 대한 OECD 요구 및 제공 현황 파악을 위하여 매년 「OECD

『제공통계 수록집』을 발간하여 국내의 OECD 통계제공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제공기관 OECD 통계 담당자의 잦은 변경 및 OECD 통계요청이 해당기관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요구통계의 계속적 변동으로 인해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통계작성 협조

- 통계청은 중앙통계기관으로서 OECD 통계의 제공기관들에 통계 작성과 관련하여 표본 설계 및 조사 방법 등 통계 작성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 통계청의 오랜 전문적 경험 공유 및 협조.

○ 통계제공기관간의 조정

- 관련 부처 및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통계청은 OECD 제공 자료의 활용도 제고와 미제공 통계의 개발 노력 및 각 부처의 OECD 통계의 중복적 제공 방지를 위한 조정의 역할을 담당.

○ 통계 관련 제도 개선

- 통계의 작성과 관련해서 요구되는 각종 법령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통계가 생산 및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

(2) 국내제공기관의 역할

○ 요청자료 제공

- OECD 가입 당시 관계기관회의를 거쳐²⁾ 요구통계에 대해

2) 부록 I. OECD 요구 통계관련 관계기관회의 참조

각 기관별로 제공과 개발에 대해 분담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 제공기관이 직접 OECD 해당 국(Directorate)에 성실한 자료 제공 및 미제공 통계에 대한 앞으로의 개발 책임을 지고 있음.

- 국제 신뢰성을 갖춘 자료 제공
 - OECD에 제공되는 자료는 OECD가 가지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생산되며 이는 각 나라간의 상호 비교자료로 활용되어 진다는 면에서 보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통계의 질 향상 측면에서도 노력이 요구됨.

※ OECD에 대한 국내 기관의 자료 제공형태

- 통계작성기관에서 직접 OECD에 송부
(예: 재경부 세입통계, 통계청 산업 및 서비스업의 구조통계 등)
- 관련 기관 및 협회에서 통계 작성 후 OECD와 해당 부처에 송부
(예: 석유통계의 경우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하여 산자부와 OECD에 송부)
- 동일한 질의서를 두개 이상의 부처에서 나누어서 작성 후 OECD에 송부
(예: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재경부와 산자부에서 분담 작성제공)

II. OECD 요구통계 및 국내 작성현황

II. OECD 요구통계 및 국내작성현황

1. OECD 통계제공의 근거

가. OECD 회원국은 일반적 의무, 권고적 의무, 자유화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통계자료의 제공은 『제규범의 원칙적 수락』이라는 일반적 의무에 속함.

나. OECD 설립협정 제3조

- 회원국은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고, 제2조의 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기구의 과업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기구에 제공함.
 - 계속적인 기초 위에서 상호 협의를 하고, 연구를 수행하며, 합의된 사업에 참여함.
 - 긴밀히 협력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상호 조정된 조치를 취함.

2. OECD 요구통계의 변천

가. 개요

- OECD 가입이후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의 목록과 내용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96년 OECD 가입단계에서는 80여종이었으나 통계의 통합·폐지로 지금은 27종이 감소한 52종의 통계가 요청되고 있음.(표 <2-1>연도별 요구통계 현황 및 표 <2-2> OECD 요구통계 연도별 변천현황 참조)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통계의 종류가 소폭으로 변화하고 있어 OECD 통계가 어느 정도 정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계속적으로 요구된 통계의 경우도 요구 항목의 내용에 있어서는 변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예를 들어 보건부문 통계의 경우 2000년 708개 항목에서 2001년 715개의 항목에 대해 요구)

- 경제·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통계의 기본적인 속성상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통계를 폐지 하기도 하고 새로이 필요성이 높아지는 정보통신기술 및 환경·복지 등의 분야에 있어서는 신규통계 및 새로운 항목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음.
- 또한 OECD 내부적으로도 각국(Directorates)의 유사 통계의 요청으로 인한 국가통계 제공기관의 보고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OECD 내의 조정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러한 유사 통계의 통합 및 조정으로 요청통계의 종류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표2-1> 연도별 요구통계현황

94년	97년	2001년	2002년
80종	63종	59종	52종

나. OECD요구통계 요인별 증감사항

- 신규증가통계(+7종) : 수산업통계(해양부), 기술수지(과기부), 분기별철강통계, 원유수입기록표, 신재생 에너지통계(산자부), 국제이동통계(노동부), 기관투자자 자산 및 부채(금감위)
- 분리통계(2종, +1종) : 연간석유 및 천연가스통계 → 연간 석유통계, 연간천연가스통계(산자부)
- 흡수·통합통계(△11종)
 - 개발원조통계(4→1종, 재경부, △3)
 - 농업통계(3→1종, 농림부, △2)

<표 2-2> OECD 요구통계 연도별 발전 현황

		OECD 요구통계명			
기관명	1994(80개)	1997(63개)	2001(59개)	2002(52개)	
통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구조통계 · 중소기업통계 · 산업활동통계 · 구매력지수 (소비자물가) · 비도시지역통계 · 인구추계 · 노동력통계 · 분기별노동력통계 · 주요경제지표 · 월별무역통계 · 비교보험통계 · DAC 회원국으로부터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및 서비스업의 구조통계 · 중소기업통계 · 산업 및 서비스지표 · 소비자물가지수(PPP) · 비도시지역통계 · 노동력통계 · 분기별노동력통계 · 주요경제지표 · 월별무역통계 · 보험통계 · 개발원조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및 서비스업의 구조통계 · 중소기업통계 · 산업 및 서비스지표 · 소비자물가지수(PPP) · 비도시지역통계 · 노동력통계 · 분기별노동력통계 · 주요경제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및 서비스업의 구조통계 · 중소기업통계 · 소비자물가지수(PPP) · 노동력통계 · 분기별노동력통계 · 주요경제지표 · 개발원조통계 	
재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C 회원국으로부터의 개도국으로의 지원흐름 · 전년도 지원협력속보 · 개도국으로의 지원흐름에 대한 주요지표 속보 				

OECD 요구통계명			
기관명	1994	1997	2001
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동구 및 구소련 신생 독립 국가의 자원흐름조사 · 세입통계 · 세금수혜통계 · 개도국에의 채권보고 · 해외투자기업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통계 · 세금수혜통계 · 개도국에의 채권보고 · 해외투자기업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통계 · 세금수혜통계 · 해외직접투자
금융감독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통계 · 은행수지 · 기관투자자 자산 및 부채
행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임금통계 	
중앙인사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임금통계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이동통계
교육인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통계 · 교육재정 지출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통계 · 교육재정 지출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통계

OECD 요구통계명			
기관명	1994	1997	2001
		2002	
과 기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 투입자원 국제조사 주요 과학기술지표 (R&D, 인력, 지출)조사 기술무역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 통계 기술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 통계 기술수지
문화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부문통계 OECD의 4개국 관광통계 국가관광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관광통계 	
농 립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무역수지 음식료품수지 육류수지 농업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통계 농업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기농업전망 농업계정
정 통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통계 정보기술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통계 통신통계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통계 공공연금 사회지출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통계 사회지출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통계 사회지출통계

OECD 요구 통계 명				
기관명	1994	1997	2001	2002
산 자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유류/가스통계 · 연간 유류/가스통계 · 고체연료/가스제조 통계 · 분기별 에너지가격, 세금통계 · 연간 전기 및 열통계 · 월별 전력통계 · 국가에너지프로그램 · 수력원자력화력발전통계 · 펄프종이 생산통계 · 선박건조통계 · 전력생산, 원자력발전 및 연료사이클 통계 · 우라늄생산수요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간석유가스통계 · 연간석유통계 · 연간천연가스통계 · 연간석탄통계 · 에너지가격 및 조세통계 · 전력 및 열통계 · 펄프종이 생산통계 · 분기별철강통계 · 선박건조통계 · 원자력통계 · 우라늄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간석유통계 · 연간석유통계 · 연간천연가스통계 · 연간석탄통계 · 에너지가격 및 조세통계 · 전력 및 열통계 · 분기별철강통계 · 선박건조통계 · 원자력통계 · 우라늄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간석유통계 · 연간석유통계 · 연간천연가스통계 · 연간석탄통계 · 에너지가격 및 조세통계 · 전력 및 열통계 · 분기별철강통계 · 선박건조통계

OECD 요구통계명				
기관명	1994	1997	2001	2002
산 자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생산비용비교 · 철 및 강철산업통계 · 선철 및 조강생산능력조사 · 강철통계 · 외국인투자기업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생산비용비교 · 연간철강산업통계 · 외국인투자기업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생산비용비교 · 연간철강산업통계 · 외국인투자기업통계 · 신재생에너지통계 · 원유수입기록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생산비용비교 · 연간철강산업통계 · 신재생에너지통계 · 원유수입기록표
관 세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별무역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별무역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통계
환 정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통계 · 공해감소 및 통제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통계 · 환경오염방지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통계 · 환경오염방지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통계 · 환경오염방지지출
해 양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통계 · 선원고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통계 · 선원고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통계 · 선원고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통계
건 교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도로사고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도로사고통계 		
경 찰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도로사고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도로사고통계

OECD 요구통계명				
기관명	1994	1997	2001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중금융통계 · 금융계정 · 비은행기관의 재무제표 · 은행수지 및 재무제표 · 금융시장동향 · 통화지표 · 개인소득 및 소득분배 · 수지통계 · 국제서비스거래 요약 · 서비스분야의 국제거래통계 · 관광계정 · 기업경기전망 · 구매력지수(기본재물가) · 정부지출 · 국민계정 · 구매력평가지수 (피용자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중금융통계 · 자금순환계정(금융계정) · 비금융업의 경영분석 · 은행수지 · 통화지표 · 수지통계 · 국제서비스거래 · 관광위성계정 · 기업경기전망 · 기본재물가(PPP) · 정부지출 · 국민계정 · 피용자보수(P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순환계정(금융계정) · 국제수지 · 국제서비스거래 · 관광위성계정 · 기업경기전망 · 기본재물가(PPP) · 정부지출 · 국민계정 · 피용자보수(PPP)

OECD 요구통계명				
기관명	1994	1997	2001	2002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력평가지수(국내지출) · 분기별국민계정 · 고정자본 플로우 및 스톡 ·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GDP) · 분기별 국민계정 · 고정자본 플로우 및 스톡 ·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GDP) · 분기별 국민계정 · 고정자본 플로우 및 스톡 ·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GDP) · 분기별 국민계정 · 고정자본 플로우 및 스톡 ·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 사회지출통계(2→1종, 보건복지부,△1)
 - R&D통계(2→1종, 과기부,△1)
 - 국제서비스거래통계(2→1종, 한국은행, △1)
 - 교육통계(2→1종, 교육인적자원부, △1)
 - 연간철강산업통계(3→1종, 산업자원부, △2)
- 흡수·통합통계후 조사중지통계(△2종)
 - OECD 국가관광통계, OECD이외 4개국 관광통계 →국제 관광통계(문광부)
- 대상제외통계(미요청통계 포함,△23종)
 - 인구추계, 월별무역통계, 비도시지역통계, 산업 및 서비스업 지표(통계청)
 - 월별전력통계, 수력·원자력·화력 발전통계, 국가에너지프로그램, 원자력통계, 우라늄통계, 펄프 및 종이생산통계, 외국인투자 기업 통계(산업자원부)
 - 금융시장동향, 월중금융통계, 비금융업의 경영분석, 통화 지표, 개인소득 및 소득분배, 관광위성계정(한은)
 - 어업통계, 선원고용통계(해양부)
 - 개도국에의 채권보고(재경부), 국가관광통계(문광부), 정보 기술통계(정통부), 기술무역통계(과기부)

3. OECD 통계의 국내제공현황

가. 현황

- 2002년 11월 현재 OECD에 제공해야 할 통계는 52종이며 통계청, 재경부, 산자부, 한국은행 등 16개 기관이 각각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OECD에 직접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OECD 요구통계 중 50종(표<2-3>참조)을 OECD에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미제공중인 통계는 2종임.

나. 제공상의 문제점

○ 통계기준의 상이로 인한 미제공의 문제

OECD 요청통계 작성상 가장 큰 문제점은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통계항목을 요청하는데 있음. 즉 요청 통계항목의 미비와 통계항목 정의의 불일치 등으로 향후 관계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불일치하는 자료에 대해 메타데이터 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미제공항목의 제공 및 제공되고 있는 통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에 수반되는 인력과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임.

○ 통계자료의 정확성 문제

OECD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의 대부분이 조사나 보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더 일관적인 기준과 조사 방법의 적용을 통해 자료의 국제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표 2-3> 관계기관별 OECD 통계 제공현황

(2002. 11월 기준)

제공기관명	통 계 명	제공기관명	통 계 명
통 계 청 (5)	산업및서비스업의구조통계 소비자물가지수 노동력통계 분기별노동력통계 주요경제지표	한 국 은 행 (12)	자금순환계정 국제수지 국제서비스거래 기업경기전망 국민계정 자본재물자 정부지출 피용자보수 지출항목별국내총생산 분기별국민계정 고정자본플로우및소득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금 감 위 (3)	보험통계 은행수지 기관투자자 자산및부채		
재 경 부 (4)	개발원조통계 세입통계 해외직접투자 세금수혜통계		
중앙인사위	공공부문임금통계		
노 동 부	국제이동통계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		
과 기 부	R&D통계		
농 립 부 (2)	중기농업전망 농업계정		
산 자 부 (12)	월간석유가스통계 연간석유통계 연간천연가스통계 원유수입기록표 연간석탄통계 에너지 가격 및 조세통계 신재생에너지통계 전력및열통계 분기별철강통계 선박건조통계 전력생산비용통계 연간철강산업통계	정 통 부	통신통계
		보건복지부 (2)	보건통계 사회지출통계
		관 세 청	무역통계
		환 경 부 (2)	환경통계 환경오염방지지출
		경 찰 청	국제도로사고통계
		해양수산부	수산업통계
		총 계	50종

<표 2-4> 관계기관별 OECD 통계 제공현황(영문)

제공기관명	통 계 명	제공기관명	통 계 명
통 계 청 (5)	Structural Statistics for Industry and Services	한 국 은 행 (12)	Balance Sheet for Finance Asset and Liability
	Survey of Consumer Prices for PPP		Balance of Payment
	Labor Force Statistics		Statistics on International Transaction
	Quarterly Labor Force Statistics		Business Tendency Survey
	Main Economic Indicator		National Account
금 감 위 (3)	OECD Insurance Committee Statistical Questionnaire		Capitals Goods for the Calculation of PPP
	Bank Profitability		Government Expenditure
	Institutional Saving and Investment		Survey of Compensation of Employees for Selected Occupations in General Hospitals in the Public Sector
재 경 부 (4)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National Expenditure Weights for the calculation of PPP
	Revenue Statistics		Quarterly National Account
중 앙 인 사 위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Flows and Stocks of Fixed Capital
노 동 부	Tax · Benefit position of Employees		Services Statistics on Value Added
교 육 인 적 자 원 부	Public Sector Pay Trends	정 통 부	Communication Outlook
과 기 부	International Migration Statistics		보 건 복 지 부 (2)
	농 립 부 (2)	The Data on Education General Statistics	관 세 청
산 자 부 (12)		The Survey of R & D in Science and Technology	환 경 부 (2)
	AGLINK Database	경 찰 청	International Road Traffic and Accident Data
	Economy Accounts for Agriculture		해 양 수 산 부
	Monthly Oil Statistics	총 계	50종
	Annual Oil Statistics		
	Natural Gas Statistics		
	Monthly Crude Oil Imports		
	Coal Statistics		
	Energy Price and Taxes		
	Annual Renewables and Wastes Statistics		
Annual Electricity and Heat Statistics			
Steel Information System			
Questionnaire on New Orders, the State of the Orderbook and Production Data			
Projected Cost of Generating Electricity			
Annual Report on the Iron and Steel Industry			

Ⅲ. OECD 통계제공과 통계 작성 승인

Ⅲ. OECD 통계제공과 통계작성승인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OECD에 제공해야 하는 52종의 통계를 통계청, 재정부, 산자부, 한국은행 등 16개 기관이 각각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OECD의 해당국에 직접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표 <3-1>참조)
- OECD에 제공하는 통계자료는 각 국가간 비교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통계자료 작성 및 제공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통계의 제공 및 관리가 필요함.
- 그러나 일부 통계를 제외하고 통계조정기관인 통계청의 통계작성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OECD에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제공통계의 신뢰성과 국가통계의 관리측면에서 감사원의 지적 사례 발생.

2. 통계작성승인 제도

○ 개요

우리나라와 같이 통계활동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각 기관이 필요한 통계를 직접 작성하는 분산형 통계제도하에서 국가통계의 균형적 발전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통계에 대해 미리 중앙통계기관의 승인을 받는 통계 조정제도임.

○ 필요성

- 유사중복통계 작성을 사전에 방지, 국민의 응답부담을 경감시키고 인력예산의 낭비요인 제거
- 통계기술적 측면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토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 정부승인통계의 신뢰성 제고

○ 승인대상통계

- 통계작성기관에서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통계법 제8조)
 - 승인을 얻은 통계의 작성중지 또는 승인사항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도 포함.

☞ OECD 제공통계의 통계작성승인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치 말고 통계청(통계조정과)에 질의

-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를 불문하고 통계청에 질의 후 승인여부 판단

※ 통계작성 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관으로 구분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별도의 지정요건이 필요 없는 당연 지정 기관

○ 지정 기관 : 민간기관으로서 지정기관 요건을 갖추어 통계청장의 지정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 **통계작성승인에 앞서 먼저 지정되어야 함**

○ 승인절차

-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조사실시예정일 또는 보고요구 예정일 30일전까지 통계작성 승인 신청서를 통계청장에게 우편, 인편, 모사전송 등에 의해 제출

○ 승인효과

- 통계작성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지정통계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자료의 검사 또는 조사자료의 제출 요구 및 관계인 질문 가능(통계법 제 12조)

- 통계작성승인이나 협의를 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작성기관의 장에 대해 협조요청 가능(통계법 제 19조)
- 통계청의 통계지정기관에 대한 예산, 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통계법 제 21조)

3. OECD 통계제공 기관의 협조사항

- 각기관별로 현재 OECD에 제공되고 있는 통계에 대해 통계작성승인 여부를 통계청(통계조정과)에 질의
 - 향후 OECD에서 신규통계 요청 시에도 제공하기 전에 먼저 통계 작성 승인여부를 질의
 - ☞ 통계작성기관에서 생산하는 통계는 반드시 통계청 승인 필요
- 질의결과 통계작성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명된 경우 해당절차에 따라 통계작성승인을 받음.

<표 3-1> OECD 제공통계 관련기관 현황

(2002. 11월 기준)

제 공 통 계 명	제 공 주 기	담 당 기 관		
		국 내 기 관		OECD
		주 관	협 조	
산업 및 서비스업의 구조통계	1년	통계청 산업통계과		STI
소비자물가지수(PPP)	반기(부정기)	통계청 물가통계과		STD
노동력통계	1년	통계청 사회통계과		ELS
분기별 노동력통계	분기	"		STD
주요경제지표	매월	통계청 국제통계과		"
보험통계	1년	금융감독위 국제협력과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DAFFE
은행수지	"	"	한국은행 통화운영팀	"
기관투자가 자산 및 부채	"	"	한국은행 자금순환팀	"
개발원조통계	1년	재정경제부 개발협력과	한국수출입은행 경제협력기금부	DCD
세입통계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DAFFE
해외직접투자	1년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과	산자부 투자진흥과	DAFFE

제 공 통 계 명	제 공 주 기	담 당 기 관		
		국 내 기 관		OECD
		주 관	협 조	
세금수혜통계	1년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DAFFE
공공부문임금통계	"	중앙인사위 정책담당관실		PUS
국제이동통계	"	노동부 고용정책과		ELS
교육통계	1년	교육인적자원부 정책분석과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통계팀	EDU
R&D 통계	"	과학기술부 조사평가과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STI
중기농업전망	1년	농림수산부 통계기획담당관실		AGR
농업계정	"	"	한국은행 국민소득팀	AGR
월간석유통계	매월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한국석유공사 전략정보팀	IEA
연간석유통계	1년	"	"	"
연간천연가스통계	1년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	한국가스공사 수요개발부	"
에너지가격 및 조세통계	분기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한국석유공사 전략정보팀	"
신재생에너지통계	1년	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	에너지관리공단 대체에너지과	"
전력 및 열통계	1년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 (자원기술과)	한국전력 경영정보팀	IEA

제 공 통 계 명	제 공 주 기	담 당 기 관		
		국 내 기 관		OECD
		주 관	협 조	
연간석탄통계	"	산업자원부 석탄산업과	대한석탄협회	IEA
원유수입기록표	매월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석유공사 전략정보팀	IEA
연간철강산업통계	1년	산자부 기초소재산업과	한국철강협회 조사정보팀	STI
분기별 철강통계	분기	"	"	"
선박건조통계	반기	산업자원부 수송기계산업과	한국조선공업협회 기획조사실	"
전력생산비용비교	5년(부정기)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조사팀	NEA
통신통계	2년	정보통신부 국제기구담당관실	정보통신산업협회 국제업무팀	"
보건통계	1년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실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ELS
사회지출통계	"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실	"	"
무역통계	매월	관세청 수출통관과		STD
환경통계	2년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		ENV
환경오염방지지출	"	"	한국은행 통계기획팀	ENV
국제도로사고통계	1년	경찰청 교통관리과	도로교통안전 관리공단	STI
수산업통계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담당관실		AGR
자금순환계정	1년	한국은행 자금순환통계팀		STD

재 공 통 계 명	재 공 주 기	담 당 기 관		
		국 내 기 관		OECD
		주 관	협 조	
국제수지	매월	한국은행 국제수지통계팀		DAFFE
기업경기전망	분기	한국은행 산업분석팀		STI
국제서비스거래	1년	한국은행 국제수지통계팀		STD
국민계정	1년	"		STD
자본재물가	3년	한국은행 물가통계팀		"
정부지출	1년	한국은행 국민소득팀		STD
비용자보수	3년	"		STD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	"	"		"
분기별 국민계정	분기	한국은행 국민소득팀		STD
고정자본 플로우 및 스톡	1년	"		"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	"		"

IV. OECD 통계조직 및 활동현황

IV. OECD내의 통계조직 및 활동현황

1. OECD 개황

가. 명 칭 :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나. 설 립 : 1961. 9. 30(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가입)

다. 회원국 (30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어키, 영국, 미국, 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한국, 슬로바키아.

라. OECD 회원국의 경제현황 (2001년 기준, 30개 회원국)

- 총GDP : 255,372억달러 (전세계의 79%)
- 총인구 : 1,124백만명 (전세계의 18.6%)
- 총수출 : 44,535억달러 (전세계의 70.5%)
- 총수입 : 48,324억달러 (전세계의 74.3%)
- 1인당 평균 GDP : 22,734달러

* 자료 : 『OECD 국가의 주요통계지표』 (2001. 12, 통계청)

마. OECD의 목적

- 설립목적

OECD는 상호 정책조정 및 정책협력을 통해 회원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간 정책 연구·협력기구임.

○ OECD규약(제1조)상의 목적

-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발전에 기여
-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
-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입각한 세계무역 확대에 기여

바. OECD 회원국의 의무

○ OECD 가입을 위한 기본자격요건

-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Pluralistic Democracy)로
- 시장경제체제(Market Economy)를 보유하고
- 인권을 존중하는 (Respect for Human Rights) 국가

○ 회원국으로서의 일반적인 의무

- 일반적 의무
 - OECD 설립 목적의 지지
 - OECD의 제규범의 원칙적 수락
 - 예산의 분담
- 권고적 의무
 - GATT 제 11조 및 IMF 제 8조의 이행
 - 개도국에 대한 일정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
- 자유화 의무
 - 국가간 서비스 및 자본거래의 자유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 및 “자본이동자유화 규약” (소위 양대자유화 규약)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
 - 다만 가입국의 경제여건에 따라 일부규약의 유보 또는 면제 가능

사. OECD 조직

OECD의 중요조직은 이사회·집행위원회·특별집행위원회·사무총장 등의 상부조직과 상부조직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전문분야별 위원회(Committee)·작업반(Working Party)과 사무국 등 하부조직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산하부속기구(Affiliated Body) 및 민간자문기관(Advisory Body)이 있음.

(1) 이사회 및 보좌기구

(가) 이사회 (Council) : 주요 정책문제토의, 기구설립, 예산승인 등 기구활동전반에 걸쳐 최종적인 의사 결정.

1) 각료이사회 (Council at Ministerial Level) :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매년 1회 개최하며 전 회원국 각료 참석(외교, 통상 및 경제장관중 1~3인)

2) 상주대표이사회 (Council at Permanent Representatives Level) : OECD 주재 각 회원국 대사로 구성(매월 2회 이상 개최)

(나) 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 이사회를 보좌하여 이사회 결정의 집행과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해 결정하며 회원국 대사 가운데서 의장으로 선출된 대사가 주재.

(다) 특별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in Special Session: ECSS) : 회원국의 OECD 담당 고위급(차관 또는 차관보급) 또는 주OECD 상주대표가 참석하여 OECD운영 전반에 걸쳐 논의.

(2) 위원회 및 작업반 (Committee and Working Party) :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Committee)를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재 집행위원회 밑에 경제정책위원회, 개발원조위원회, 무역위원회 등 24개의 전문분야별 위원회가 설치되어 회원국 정책당국자간 정기적 대화 실시.

- 개별위원회 산하에는 위원회의 과제중 하나 혹은 일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작업반(Working Party/Group/Programme)이 탄력적으로 설치 운영 중(현재 약 200여개의 작업반 활동 중)

(3) OECD 산하 부속기구 (Affiliated Body) :

OECD내에는 독립적 의사결정체제를 갖춘 원자력기구(NEA), 국제에너지기구(IEA), 개발센터 (Development Center) 등의 부속기구가 있음.

(4) 민간자문기관(Advisory Body) :

OECD의 이사회 및 여러 위원회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는 국제 NGO.

-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 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5) 사무국

-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모임과 사업추진을 행정적, 전문적으로 지원.
- 사무총장 1인이 4인의 사무차장의 보좌를 받아 사무국을 지휘, 감독.
 - 사무총장 : Donald Johnston (캐나다)
 - 임기 5년 (96.7. 취임)
 - 연임결정(2000.12.)으로 2006년까지 재임 예정
 - 사무차장 (4인) :
 - T. Moe(노르웨이), S. Kondo(일본), H. Schlogl(독일), S. Shelton-Colby(미국)
- 사무국 구성 :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들 산하에 총14개의 국(Directorate)이 있어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를 분담해 지원함.
 - 직원 : 총직원 2,148명 (정규직원 1,836명, 임시직원 312명: 2000, 12월 기준)

<표 4-1> OECD 사무국 및 업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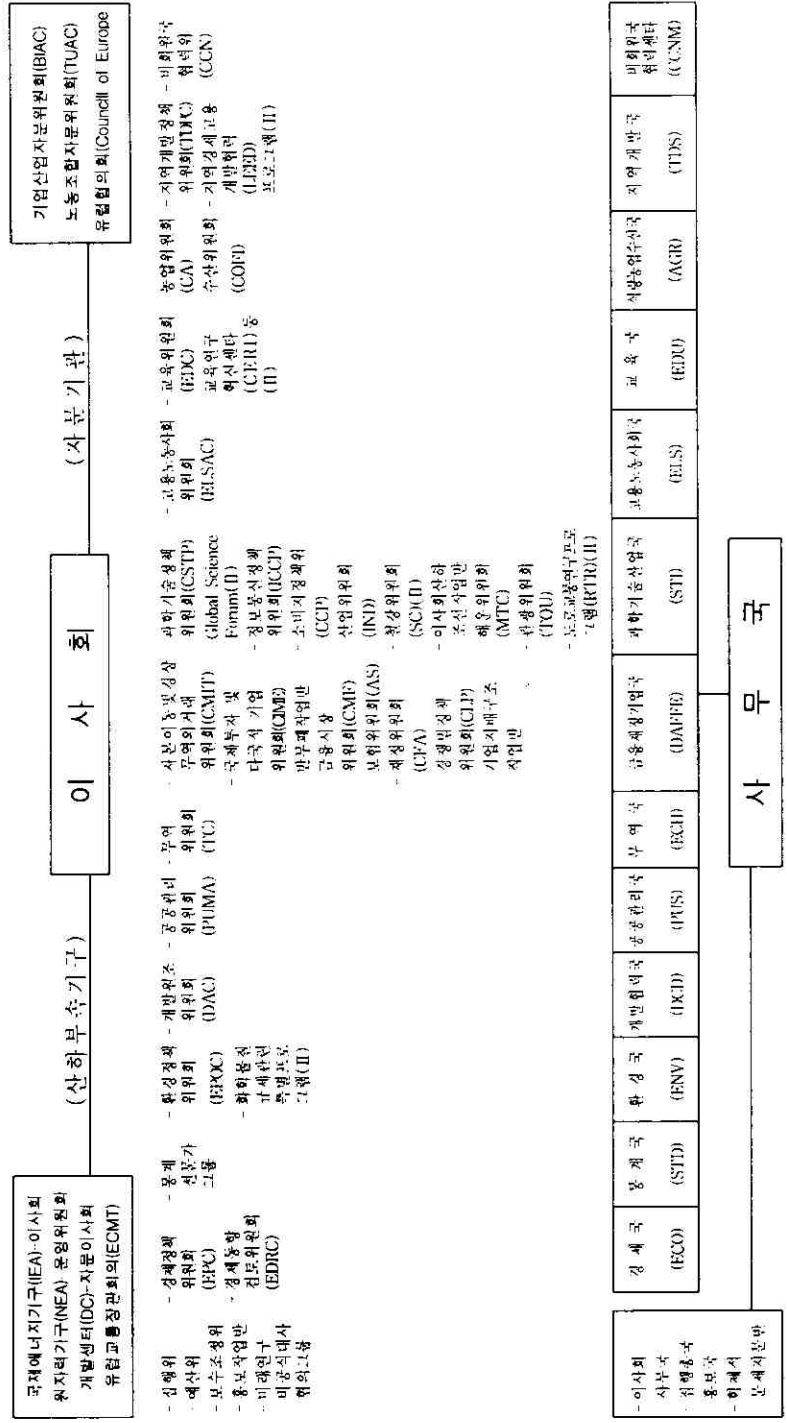
부 서	담당업무 또는 담당위원회
1) 사무총장실 및 부속기관 - 비서실 - 법률국 - 재정관리 - 사무총장 학제적 연구자문반 - 대외관계 담당 - 대비회원국 협력센터 (Center for Cooperation with Non-Memb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협정 및 규약의 해석 • OECD 공식문서 검토 • 신규회원국의 가입조건 협의 • OECD 미래연구 프로그램 추진 • 대비회원국 위원회
2) 집행총국(EXD) Executive Directorate ○ 국장 : Mr. Anthnoy Hu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직원 채용 및 관리 • OECD 예산 운용 • 컴퓨터, 통신, OLISnet 관련 업무
3) 경제국 (ECO) Economics Department ○ 국장 : Mr. Jean-Philippe Cot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정책위원회 • 경제동향검토위원회 • 회원국 경제동향에 대한 정기적 검토 • 세계경제현황 분석 등
4) 통계국 (STD) Statistics Directorate ○ 국장: Mr. Enrico Giovannin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계정, 구매력평가, 서비스통계, 주요경제지표 관련 다양한 통계전문가 그룹 운영
5) 환경국 (ENV) Environment Directorate ○ 국장 : Mr. Keuneth Ruff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정책위원회 • 화학제품규제관련 특별프로그램

부 서	담당업무 또는 담당위원회
6) 개발협력국 (DCD)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 국장 : Mr. Michael G. Roe Ska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원조위원회 - 회원국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정기 검토 - 대외원조통계 종합·분석 - 개도국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회원국 원조정책 조율 등
7) 공공관리국 (PUS) Public Management Service ○ 국장 : Mrs. Odile Sall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관리위원회 - 규제관리와 개혁 - 시민관계강화 - 예산정책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
8) 무역국 (ECH) Trade Directorate ○ 국장 : Mr. J-M. Metzg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위원회 - 다자무역체제 강화활동 - 비회원국과의 협력체제보강 - 공정한 수출신용체제 정착 등
9) 금융·재정·기업국(DAFFE) Directorate for Financial, Fiscal and Enterprise Affairs ○ 국장 : Mr. William Witherre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 •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거래위원회 • 금융시장위원회 • 보험위원회 • 재정위원회 • 경쟁법정책위원회
10) 식량·농업·수산물국 (AGR) Directorate for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 국장 : Mr. Stefan Tangerma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위원회 - 회원국 농업정책 점검·평가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구조조정에 관한 분석 등 • 수산물위원회

부 서	담당업무 또는 담당위원회
11) 과학·기술·산업국 (STI) 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 국장 : Mr. Takayuki. 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정책위원회 • 정보 컴퓨터 통신정책위원회 • 산업위원회 • 해운위원회 • 철강위원회 • 메가사이언스 포럼 • 육로운송연구분야의 협력프로그램 • 소비자정책위원회 • 관광위원회
12) 고용·노동·사회국 (ELS) 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 국장 : Mr. John Mart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 - 노동시장정책평가 및 모니터링 - 사회보건정책의 신좌표 모색
13) 교육국 (EDU) Directorate for Education ○ 국장 : Mr. Barry McGa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위원회 • 교육연구혁신센터 - 평생학습 동기화 사업 검토 등
14) 지역개발국 (TDS) Territorial Development Service ○ 국장 : Mr. Mario Pezzin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 국별검토 • 지역개발 정책분석 기법 재정리작업
15) 대외관계 및 홍보국(PAC)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 Directorate ○ 국장 : Mr. C. W. Broo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홍보 담당

주) 각 부서의 약칭은 OLISnet상의 국(局)약칭을 인용

〈그림 4-1〉 OECD 조직도



* "II"는 자립적 기여(PanII 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구

아. OECD 예산

(1) OECD 예산의 구분

- Part I: 모든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사업들을 위한 예산
- Part II: 회원국들이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위한 예산
- 연금예산 : 퇴직 사무국직원들 연금의 재정을 위한 예산
- 그외에 비정규예산으로 특정 개별사업들을 위해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기여해 조성되는 예산이 있음.
- 전회원국이 부담하는 Part I 비용에 대한 각국 분담금의 크기는 각국의 GNP에 비례함(단 미국의 경우 25%로 고정되어 있음.)

(2) 예산의 규모 및 분담금(2002년 기준)

- 2002년도 총예산의 규모는 253,663 천EUR임.

<표 4-2> OECD 분야별 예산 및 우리나라 분담금 현황

(단위 : 천EUR)

	총 계	Part I	Part II	연금예산
총 예산	253,663	170,199	42,927	40,537
분 담 금	4,528	3,006	806	716
분 담 륜 (%)	1.8	1.8	1.9	1.8

자료 : OECD 대표부

2. OECD 통계국 (STD: Statistics Directorate) 현황 및 업무내용

가. 개요

- 통계국은 OECD와 회원국간의 정책 관련 통계정보의 적기 제공 및 교환을 위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경제국(Economics Department)에서 통계부문을 분리시켜 1992년에 설립되었음. 통계국의 주요한 역할은

첫째, OECD 위원회, 각종 작업반과 회원국 정부 등에게 경제 발전의 분석을 위해 요구되는 믿을만하고 비교 가능한 핵심적 통계 제공.

둘째, 다른 OECD의 각국들과 국제기구와 협조하여 국제 통계기준의 개발 및 처리방법과 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

셋째, OECD내의 통계활동에 대한 정보를 알리며 OECD내의 데이터와 메타데이터의 수집 및 통계활동의 조정 역할 수행임.

- 이외에도 지속가능발전, 서비스통계, 국민계정과 같은 정책 분야에서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기 위해 다른 국제기관, OECD의 각국(Directorates)들, 회원국 정부의 통계인들과 작업을 하며 대부분의 통계국 통계자료는 전자적 또는 페이퍼 간행물을 통해 이용가능함.

나. 주요 활동

- 농업경제계정(Economic Accounts for Agriculture)
- 금융통계 : 통화량(Monetary aggregate), 이자율, 주가, 국제 수지, 환율 등

- 산업과 서비스 통계
- 국제 거래 통계 : 해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등
- 노동력통계
- 선행지수와 동향 조사(Leading Indicators and Tendency Surveys)
- 국민 계정
- 물가지수와 구매력 평가(Prices and Purchasing Power Parities)
- 통계 방법론 (Statistical Methodology) : OECD의 데이터와 메타데이터의 수집과 공표에 관한 정책 개발, 국제 통계 기준과 지침의 개발, 기타 측정방법에 대한 연구, 통계용어집 작성(Glossary of Statistical Terms: OECD 홈페이지 Statistical Portal에서 이용가능)
- 비회원국가들에 대한 통계 : 주요 경제통계 생산에 있어 회원국의 경험을 비 회원국에게 전달 및 주요한 비회원국의 핵심 경제 통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다. 통계국 조직

(1) 총인원 : 66명

* 통계국장 : Mr. Enrico Giovannini (Chief Statistician and Director)

(2) 과별 업무내용

(가) 국민계정과 (National Accounts Division)

- 인 원 : 24명 (과장 : Mr. Franqois Lequiller)
- 구 성 : ‘국민계정팀’ 및 ‘무역·산업·농업·서비스업팀’
으로 구성

- 국민계정팀 (National Accounts Section)
 - 인 원 : 11명
 - 팀 장 : Paul Schreyer
 - 담당업무 : 국민계정, PPP, 자본스톡
- 무역·산업·농업·서비스업팀 (Trade, Industry, Agriculture and Services Section)
 - 인 원 : 11명
 - 팀 장 : Andreas Lindner
 - 담당업무 : 농업, 서비스업, 산업, 무역 통계

(나) 주요경제지표(MEI)과 (Main Economic Indicators Division)

- 인 원 : 18명 (과장 : Mr. Denis Ward)
- 구 성 : ‘주요경제지표(MEI) 팀’ 및 ‘노동력통계계’로 구성

- 주요경제지표팀 (Main Economic Indicators Section)

- 인 원 : 1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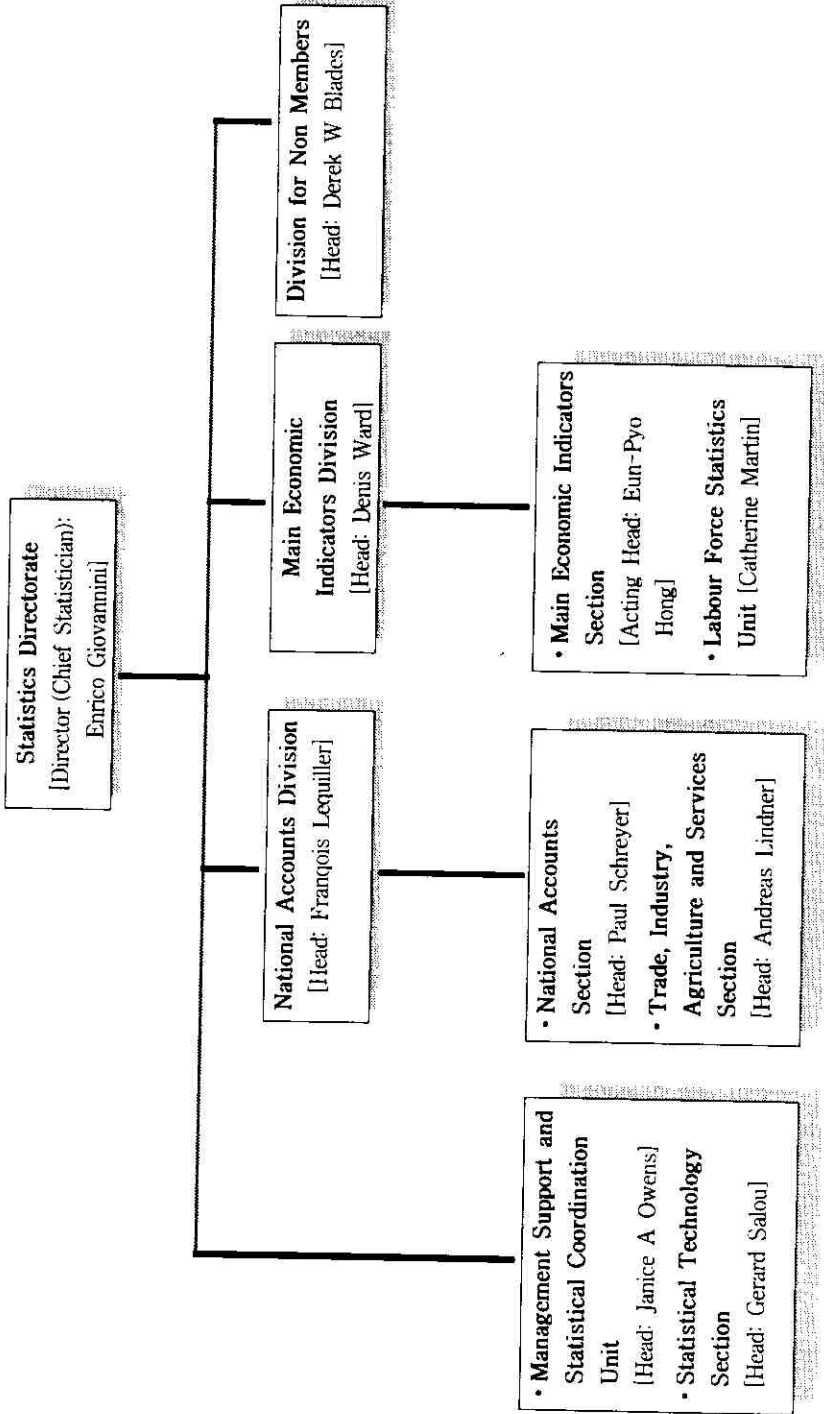
※ Senior Consultant 통계청 최봉호 과장 포함

- 팀 장 : 홍은표 박사 (Acting Head)
- 담당업무 : 단기경제지표(Short-term economic statistics), 국제수지(BOP)통계, 선행종합지수(Composite Leading Indicators)

- 노동력통계계 (Labour Force Statistics Unit)

- 인 원 : 1명 (Miss. Catherine Martin)
- 담당업무 : 노동력통계 (Labour Force Statistics)

〈그림 4-2〉 OECD 통계국 (STD; Statistics Directorate)의 조직도 (2002. 11월 현재)



(다) 비회원국 담당과 (Division for Non Members)

- 인 원 : 10명
 - 과장 : Mr. Derek W Blades
 - ※ Senior Consultant 한국은행 안길호 과장 포함.
- 담당업무 : 비회원국들(중국, 발틱 등)의 통계 담당

(라) 관리지원·통계조정계

(Management Support and Statistical Coordination Unit)

- 인 원 : 5명
 - 팀 장 : Mrs. Janice A Owens
- 담당업무 : 행정 지원 (Administrative support)

(마) 통계기술팀 (Statistical Technology Section)

- 인 원 : 7명
 - 팀 장 : Mr. Gerard Salou
- 담당업무 : 기술지원 (Technical support)

3. OECD 통계국 (STD) 이외의 통계업무 현황

가. OECD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분석 및 정책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통계 작성을 위해서 통계국 (STD) 이외의 많은 국(局, Directorate)에서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나. 통계국(STD) 이외의 국(局)별 통계업무 현황

부 서	담당 통계
경제국 (ECO) Economics Department	• 경제예측
환경국 (ENV) Environment Directorate	• 환경통계 (오염, 쓰레기 등)
개발협력국 (DCD)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 개도국 및 전환경제국가에 경제 원조 통계
공공관리국 (PUS) Public Management Service	• 공공부문 통계 (임금, 고용, 전자정부 등)
금융·재정·기업국(DAFFE) Directorate for Financial, Fiscal and Enterprise Affairs	• 금융, 재정, 기업, 세금, 보험통계 등
과학·기술·산업국 (STI) 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 과학, 기술, 산업(R&D, 관광, 철강 등)
고용·노동·사회국 (ELS) 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 고용, 노동, 보건, 인구통계 등
교육국(EDU) Directorate for Education	• 교육통계 등
식량·농업·수산업국 (AGR) Directorate for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 식품·농업·수산업통계 등
지역개발국 (TDS) Territorial Development Service	• 지역개발자료

다. 기타

OECD내에는 목적이나 활동 등에서 신축성을 갖는 반독립적 관련 기구가 다수 있으며 이 기구들에서도 분석적 목적 등을 위해 다양한 통계 생산.

- 국제에너지기구 (IEA) : 에너지 통계 (석탄, 석유, 전기, 가스 등)
- 원자력기구 (NEA) : 원자력, 우라늄 통계
- 유럽교통장관회의 (ECMT) : 유럽교통통계 (철도, 도로, 내륙수로 등)

V. OECD 발간 주요 통계간행물

V. OECD 발간 주요 통계간행물

1. 개요

- OECD에서는 매년 약 4,000여종의 책자형태의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는데, 통계자료의 발간은 OECD의 주요 기능중의 하나임. OECD에서는 각 국가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해 집계·분석한 많은 통계간행물을 월별, 분기별 및 연간으로 발간하고 있음.
- 발간된 간행물은 해당 자료 제공기관에는 우편을 통해 책자가 제공되고 있으며, OECD에서는 일반인도 자료이용이 가능토록 대부분의 간행물을 OECD의 홈이나 OLISnet(한정된 정부 기관만 열람가능)을 통해 On-line 상에서도 제공하고 있음.
 - 최근 OECD에서는 보다 많은 통계자료를 무료로 제공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OECD의 통계정보가 널리 공유될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을 채택하여 실시해오고 있음.

2. OECD 통계 간행물의 입수

- OECD 발간자료에 대해서는 OECD 홈의 Documentation 코너의 검색, Source OECD 【www.SourceOECD.org: 이 사이트는 OECD의 online library로 가입한 기관만이 자료 이용 가능】 , OECD OLISnet을 통해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자료의 구입이 필요할 시에는 OECD의 Bookshop과 아시아지역의 경우 OECD 도쿄센터(www.oecdtokyo.org)를 통해서도 해당 간행물의 입수 가능.

- 또한 통계청에서는 중앙통계기관으로서 OECD가 발간하는 각종 통계간행물을 무료 또는 유료로 입수하여 이를 편집후 통계청 홈페이지의 종합 통계 DB 검색사이트인 KOSIS (<http://kosis.nso.go.kr>)에 올려놓아 국민들이 OECD 통계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OECD 통계 간행물의 활용

- OECD에서는 수집된 방대한 통계자료를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정리 하여 다양한 형태로 배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자료들을 관련부처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선진적 통계기법의 습득과 선진 각 국에 대한 정보습득, 정책형성시 활용 등의 기회로 이용이 필요함.
- 책자형태의 간행물이외에도 장기적인 시계열자료를 갖춘 보다 세부적인 자료는 CD-ROM으로도 생산되고 있음(25종, 대부분 유료)

4. OECD 발간 주요 통계간행물

가. Agriculture & Food (농업 및 식품)

- 발간국(局) : AGR (Directorate for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 Agricultural Outlook : 2001-2006 (2001 Edition)
 - Review of Fisheries in OECD Countries : Policies and Summary Statistics (2001 Edition)

나. Development (저개발국 지원 관련)

- 발간국(局) : DCD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 Credit Reporting System on Aid Activities
 - Development Cooperation Reviews

- External Debt Statistics: 1999/2000 (2001 Edition)

다. Education (교육)

- 발간국(局) : EDU (Directorate for Education,)
-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1 Edition)

라. Employment (고용)

- 발간국(局) : ELS (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 OECD Employment Outlook (June 2001)
- 발간국(局) : STD (Statistics Directorate)
- Labour Force Statistics: 1980/2000 (2001 Edition)
- Quarterly Labour Force Statistics
- Services : Statistics on Value Added and Employment (2001 Edition)

마. Energy (에너지)

- 발간국(局) :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 Energy Prices and Taxes
- Oil, Gas, Coal and Electricity - Quarterly Statistics
- Energy Statistics of OECD Countries: 1998/1999 (2001 Edition)
- Oil Information: 2000 (2001 Edition)
- World Energy Outlook - 2001
- Energy: The Next Fifty Years

- 바. Environment & 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 및 지속가능개발)
- 발간국(局) : ENV (Environment Directorate)
 - OECD Environmental Data: Compendium (1999 Edition)
 - OECD Environmental Indicators :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 2001
 - OECD Environmental Outlook
 - Frameworks to Measure Sustainable Development : An OECD Expert Workshop (Series: OECD Proceedings)
 -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to Measure Progress (Proceedings of the Rome Conference) (Series: OECD Proceedings)
- 사. Finance & Investment/Insurance & Pensions (금융, 투자 · 보험 및 연금)
- 발간국(局) : DAFFE (Directorate for Financial, Fiscal and Enterprise Affairs)
 - Bank Profitability: Financial Statements of Banks 2000
 - Institutional Investors: Statistical Yearbook 1999/2000 (2001 Edition)
 - Insurance Statistics Yearbook: 1992/1999 (2001 Edition)
 -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Statistics Yearbook
- 아. General Economics & Future Studies (경제일반)
- 발간국(局) : ECO (Economic Department)
 - OECD Economic Outlook
 - OECD Economic Studies
 - OECD Economic Surveys

- 발간국(局) : STD (Statistics Directorate)
 - Main Economic Indicators
 - Quarterly National Accounts
 -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Detailed Tables 1988/1999 (2001 Edition Volume 2)
 -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 Glossary

- 자. Industry, Services & Trade (산업·서비스 및 국제무역)
 - 발간국(局) : STI (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 OECD Small and Medium Enterprise Outlook (2000 Edition)
 - 발간국(局) : STD (Statistics Directorate)
 - Indicators of Industry and Services
 - Structural Statistics for Industry and Services: Vol. 1: Core Data - Vol. 2: Energy Consumption (2000 Edition)
 - International Trade by Commodities Statistics
 - Monthly Statistics of International Trade
 - OECD Statistics o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1990 /1999 (2001Edition)

- 차. Nuclear Energy (핵에너지)
 - 발간국(局) : NEA (Nuclear Energy Agency)
 - Nuclear Energy Data: 2001
 - Uranium 1999: Resources, Production and Demand

- 카. Science & Information Technology (과학 및 정보기술)
 - 발간국(局) : STI (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 Basic Science and Technology Statistics (1999 Edition)

- Mobile Phones: Pricing Structures and Trends
 -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01 Edition)
 - OECD Information Technology Outlook : ICTs, E-commerce and the Information Economy 2000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 Towards a Knowledge-based Economy (2001 Edition)
 -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 Drivers of Growth : Information Technology,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2001 Edition)
 - Social Sciences for a Digital World : Building Infrastructure and Databases for the Future
 -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Electronic Commerce : Preliminary Findings and Research Agenda
 -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 The Measurement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ctivities
 -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in Industry : 1987/1999 (2001 Edition)
 -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Drivers of Growth : Information Technology,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2001 Edition)
- 타. Social Issues/Migration/Health (사회문제 · 인구이동 · 보건)
- 발간국(局) : ELS (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 A System of Health Accounts
 - Health at a Glance

- Combating the Illegal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 Literacy in the Information Age: Fin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 Maintaining Prosperity in an Ageing Society
- OECD Employment Outlook (June 2001)
- Society at a Glance : OECD Social Indicators (2001 Edition)
-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 SOPEMI 2001 Edition
- Waging the Global War on Poverty : Strategies and Case Studies

파. Taxation (조세)

- 발간국(局) : DAFFE (Directorate for Financial, Fiscal and Enterprise Affairs)
 - Revenue Statistics: 1965/1998 (1999 Edition)
 - Revenue Statistics: Special Features: Current Issues in Reporting Tax Revenues - The Impact of GDP Revisions 1965/2000 (2001 Edition)
 - Taxing Wages: 2000/2001 (2001 Edition)

하. Transport (교통)

- 발간국(局) : STI (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 Trends in the Transport Sector: 1970/1998 (2000 Edition)

VI. OECD 주관 통계관련 주요 국제 회의

VI. OECD 주관 통계관련 주요 국제회의

1. 개요

- OECD에서는 매년 다양한 분야의 통계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전반적인 통계이슈 및 통계 정책을 다루는 OECD 통계기관장회의(OECD High Level Group on Statistics)에서부터 전문적 분야에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서로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모범 관행(good practices)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태스크 포스(task force), 전문가회의(expert meeting) 및 작업반 회의(working party) 등 다양한 회의가 매년 정기적·부정기적으로 개최됨.
- OECD 및 다른 국제기구의 통계회의에서는 통계 분야별 통계 기준이나 분류 등이 세워지고 있는데 주로 서구 국가들의 주도적 참여로 서구적 현실에 입각한 기준이 많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국제비교시 실제보다 낮은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음. 앞으로는 한국에서도 이러한 국제회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정의나 기준 정립시에 아시아 및 한국의 현실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됨.
- OECD에서 개최하는 모든 국제회의의 정보는 OLISnet의 “Event & People”코너 및 “Meetings” 코너에 수록되어 있음.
 - 이중 통계 관련 국제회의 정보는 『The Statistics Newsletter』(OECD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의 매호 뒷부분 “Forthcoming OECD Statistics and Meeting” 코너에서 정기적으로 소개.

※ OECD Statistics Newsletter의 다운로드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 ⇒ Statistics Portal
(좌측메뉴) ⇒ The Statistics Newsletter (우측메뉴) ⇒ 다운로드 가능

2. OECD 주관 통계관련 국제회의(최근 1~2년 자료를 토대로 정리)

가. STD (통계국) 주관

[일반 회의]

- OECD 통계자문그룹 회의 (뉴욕, 3월)
OECD Statistical Advisory Group
- 유럽통계기관장회의 (파리, 6월, ECE 주관)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 OECD 통계기관장회의 (파리, 6월)
OECD High Level Group Meeting on Statistics

[국민계정 관련 회의]

- 국민계정 전문가 회의 (파리, 10월)
Meeting of National Accounts Experts
- 국민계정회의 (제네바, 4월, OECD-UNECE 공동주관)
Joint OECD/UNECE Meeting on National Accounts
- CIS 국가의 SNA 회의 (파리, 5월, OECD-ECE 공동주관)
Meeting on SNA for CIS countries
- 발틱국가의 분기별 국민계정 워크숍 (파리, 7월)
Workshop on Quarterly National Accounts
(Baltic countries)

- 남동유럽국가의 분기별 국민계정 워크숍 (파리, 9월)
Workshop on Quarterly National Accounts for Countries of South and East Europe
- 국민계정 워크숍 (칭도, 9월, 중국통계국-OECD 공동주관)
Workshop on National Accounts
- 비공식경제에 관한 회의 (자그렙, 3월)
Meeting on Non-Observed Economy
- 비공식경제에 관한 회의 (모스크바, 4월)
Meeting on Non-Observed Economy

[기타 회의]

- OECD 구매력평가지수 회의 (파리, 11월)
Meeting on the OECD PPP Programme
- World Bank/OECD 구매력평가지수 회의 (워싱턴, 1월)
Joint World Bank & OECD Seminar on Purchasing Power Parities
- OECD PPP 비유럽 참가국 회의 (오타와, 10월)
Meeting for Pacific Group Countries on the OECD PPP Programme
- 멕시코 PPP 회의 (아파스칼리엔테스, 10월)
PPP Meeting for the Pacific Group
- CIS 국가의 PPP 프로그램 회의 (모스크바, 5월)
Meeting on Purchasing Power Parities Program for CIS Group

- 소비자물가지수에 관한 ILO 매뉴얼 초안 검토 워크숍 (싱가포르, 6월)
Joint Statistics Singapore-OECD Workshop for countries of the ESCAP region to review the draft Manual ILO on Consumer Price Indices
- OECD 단기경제지표 통계전문가그룹회의 (파리, 6월)
OECD Short-term Economic Statistics Expert Group Meeting
- 선행종합지수 및 경기전망조사 워크숍 (방콕, 11월, ADB - OECD-ESCAP 공동주관)
Workshop on Composite Leading Indicators and Business Tendency Survey
- 경기전망조사 워크숍 (리오데자네이로, 11월, ECLAC 공동)
Workshop on Business Tendency Surveys
- 유럽지역의 식품·농업통계 회의 (제네바, 10월, OECD-ECE-Eurostat -FAO 공동주관)
Meeting on Food and Agricultural Statistics in Europe
- 국제무역통계회의 (파리, 12월)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Meeting

나. STI (과학·기술·산업국) 주관

- 생명공학통계 회의 - 과학기술정책위원회 (파리, 5월)
Ad hoc meeting on Biotechnology statistics - Committee on scientific and technology policy
- 관광위원회 통계작업반회의 (파리, 10월)
Statistical Working Party of the Tourism Committee

- 산업기업환경위원회 통계작업반회의 (파리, 11월)
Statistical Working Party of the Committee on Industry and Business Environment
- 산업기업환경위원회 통계작업반회의 - 세계화세션 (파리, 4월)
Statistical Working Party of the Committee on Industry and Business Environment - Session on Globalisation
- 정보화사회 지표에 관한 ICCP위원회 작업반회의 (스톡홀름, 4월)
ICCP Committee Working Party on Indicators for the Information Society (WPIIS)
- 정보화경제 ICCP 위원회 작업반회의 (파리, 6월)
ICCP Committee Working Party of the Information Economy (WPIE)
- 과학기술지표 국가전문가 작업반회의 (로마, 5월)
Working Party of National Experts o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다. EDU(교육국) 주관

- 교육통계지표 자문그룹회의 (파리, 5월)
Education Statistics and Indicators - Technical Group
- 교육시스템지표 회의 (부다페스트, 10월)
Network A Meeting, 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 (INES)
- 교육시스템지표 회의 (프라하, 10월)
Network B Meeting, 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 (INES)

- 교육시스템지표 기술그룹회의 (파리, 12월)
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 (INES) Technical Group
- 특별교육수요통계지표에 관한 국가대표회의 (파리, 4월, CERI 주관)
Meeting of Country Representatives on Special Educational Needs (SEN) Statistics and Indicators

라. ELS(고용·노동·사회국) 주관

- 고숙련노동자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세미나 - 통계적 분석에서 정책형성까지 (파리, 6월, STI와 공동주관)
International mobility of high skilled workers: from statistical analysis to the formulation of policies.
Seminar organized by OECD
- OECD 보건자료 국가담당자 회의 (파리, 2월)
Annual Meeting of OECD Health Data National Correspondents

마. DAFFE (금융·재정·기업국) 주관

- 조세정책분석·세금통계 작업반회의 (파리, 6월)
Working Party no. 2 on Tax Policy Analysis and Tax Statistics of the Committee on Fiscal Affairs
- 금융통계 작업반회의 (파리, 11월)
Working Party on Financial Statistics
- 세입통계 상임위원회 (파리, 6월)
Steering Group on Revenue Statistics

바. ENV (환경국) 주관

- 환경경제계정회의 (부어버그, 5월)
Meeting on the System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 (SEEA)

- 쓰레기방지지표 워크숍 (파리, 6월)
Workshop on Waste Prevention Indicators
- 환경정보 및 전망 실무그룹 (파리, 10월)
Working Group on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Outlooks (WGEIO)
- OECD 쓰레기방지 워크숍 - 쓰레기방지·재생 실무그룹
공동주관 수행지표 (파리, 10월)
OECD Workshop on Waste Prevention: Toward Performance Indicators organized jointly by the Working Group on Waste Prevention and Recycling (WGWPR)
- 환경 및 세금 전문가회의 (파리, 11월)
Joint meeting of Environment and Tax experts

사. DCD (개발협력국) 주관

- 개발원조위원회 통계작업반회의 (파리, 4월/6월)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 Working Party on Statistics
- PARIS 21 연례컨소시엄회의 (파리, 10월)
PARIS 21 - Annual Consortium Meeting

아. TDS (지역개발국) 주관

- 지역지표 작업반 회의 (파리, 1월)
Working Party on Territorial Indicators

자. AGR (식량·농업·수산물) 주관

- 노르웨이/OECD 농업조경지표 전문가회의 (오슬로, 10월)
Norway/OECD Expert Meeting on Agricultural Landscape Indicators

VII. OLISnet 및 관련통계 소개

VII. OLISnet 및 관련통계 소개

1. 개요

- OLIS(Online Information Services) net란 “OECD의 종합 통계정보망”으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한된 사람(주로 공공기관)에 한해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One-stop 온라인 서비스망임.
- 경제협력기구(OECD)가 회원국(국제기구 및 비회원참여국 포함) 정부 및 공공기관에 문서·통계·간행물 등 각종 주요 정보를 제공
- 가입시 각국의 OLIS 담당부처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OECD 사무국의 승인이 필요
 - 우리나라의 업무 담당부처 : 외교통상부 경제기구과

2. OLISnet 의 구성

- OLISnet 을 통해 아래의 자료를 얻을 수 있음.
 - 각종 통계자료
 - Documents (각종 paper, 회의자료)
 - 기타 (간행물소개, 국제회의정보, 조직소개 및 직원연락처 등)
- 메뉴별 수록 내용

메뉴	내용
- Statistics (각종통계자료)	각종 국제 통계자료 수록
- Documents Locator	OECD의 모든 공식문서 를 시기별·국(局)별로 열람가능

메뉴	내용
- 기타	
· Publication Locator	OECD 발간 <u>간행물</u> 소개 (가격 등)
· Contacts & Telephone Nos.	OECD <u>직원 연락처</u> 및 OLISnet 이용자 명단
· Event & People	OECD 주관 <u>각종 회의 등 행사</u> 를 주·월 별로 수록
· Committee Discussion Group	각 위원회별 토론그룹. 통계국(STD)은 해당없음
· My OLISnet	사용자 정보 (변경가능)
· Other Services	OLISnet 사용자 관련 통계
· News	뉴스
· Observer	「OECD Observer」 잡지 소개
· Meetings	OECD 주관 각종 회의정보 수록
· Policy Briefs	정책 관련 문서
· Map	OECD 본부 연락처·지도 및 사무소 연락처
· Bodies	OECD내 이사회, 집행위, 사무국 등 조직 소개
· About	OECD 소개
· Subscribe	OLISnet 가입 신청서 및 사용자 규약

3. OLISnet 활용실태

가. 각국의 OLISnet 활용실태

- 2002. 11월 현재 국제기구 및 58개 국가(비회원국 포함)에서 총 9,257개의 OLISnet 을 이용하고 있음.
- OECD에서 생산되는 각종 페이퍼와 통계자료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선진 정보의 입수 및 정책 자료로의 활용이 요구됨.

- 국가별 OLISnet 계정 수 (국제기구 및 58개 국가 총9,257개)

국 가 명	계 정 수	국 가 명	계 정 수
국제기구	1,022(EC 744포함)	일본	193
캐나다	1,054	그리스	171
미국	578	벨기에	177
스위스	430	슬로바키아	165
이태리	501	덴마크	167
독일	466	멕시코	152
프랑스	442	체코	143
오스트리아	307	스페인	155
네덜란드	332	포르투갈	112
터키	372	아일랜드	113
핀란드	286	한국	84
노르웨이	271	뉴질랜드	78
스웨덴	269	룩셈부르크	79
폴란드	224	아일랜드	42
영국	214	기타(28개국)	224
호주	226	총계	9,257
헝가리	208		

자료 : OECD Paris 및 주OECD대표부

나. 한국의 OLISnet 가입 현황

- OECD 가입이래, 우리나라 정부기관 및 각종 연구소에서 OECD OLISnet을 신청하여 2002년 11월 현재 총 84개의 OLISnet 계정을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음.

<표7-1> OLISnet 한국 가입기관 현황

분 야	기 관	계정 주소
대 표 부	Korean Delegation in Paris	001 DELEG/KOR/OECD/FR
	Korean Delegation in Paris	002 DELEG/KOR/OECD/FR
	Korean Delegation in Paris (local staff)	003 DELEG/KOR/OECD/FR
	Korean Delegation to the WTO	001 PMWTO/KOR/OECD/FR
외부/통상	Ministry of Foreign Aff.and Trade, Economic Organisations Division	001 FA/KOR/OECD/FR
	Ministry of Foreign Aff.and Trade, Int.Economic Aff. Bureau국장실	007 MFA/KOR/OECD/FR
	Ministry of Foreign Aff.and Trade, Economic Cooperation Div. II	001 MFA/KOR/OECD/FR
	Ministry of Foreign Aff.and Trade, Science and Resources Division	002 MFA/KOR/OECD/FR
	Ministry of Foreign Aff.and Trade, Environment Cooperation Div.	003 MFA/KOR/OECD/FR
	Ministry of Foreign Aff.and Trade, Multilateral Trade Division	001 TIE/KOR/OECD/FR

분 야	기 관	계정 주소
외무/통상	Ministry of Foreign Aff.and Trade, WTO Team	004 MFA/KOR/OECD/FR
	Ministry of Foreign Aff.and Trade	005 MFA/KOR/OECD/FR
	Ministry of Foreign Aff.and Trade (북미통상과)	008 MFA/KOR/OECD/FR
	KOICA	001 KOICA/KOR/OECD/FR
	The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002 FA/KOR/OECD/FR
재 경	Ministry of Finance & Economy - International Tax Division	001 FIN/KOR/OECD/FR
	Ministry of Finance & Economy - Financial Cooperation Division	002 FIN/KOR/OECD/FR
	Ministry of Finance & Economy -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003 FIN/KOR/OECD/FR
	Ministry of Finance & Economy - Economic Policy Bureau	004 FIN/KOR/OECD/FR
	Ministry of Finance & Economy - Consumer Policy Division II	005 FIN/KOR/OECD/FR
	National Tax Administration - International Taxation Division 2	001 NTA/KOR/OECD/FR
	Office of National Budget	001 ONB/KOR/OECD/FR
	KIEP - Information Management Center	001 IEP/KOR/OECD/FR
	Korea Consumer Protection Board	001 CPB/KOR/OECD/FR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001 KDI/KOR/OECD/FR
	Korean Institute for Public Finance	001 KIPF/KOR/OECD/FR
산업/자원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 Energy, Inter.Trade Division	001 CIE/KOR/OECD/FR
	Korean Industrial Property Office, Inter.Co-operation Division	001 IPO/KOR/OECD/FR

분 야	기 관	계정 주소
산업/자원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 and Trade(KIET)	001 KIET/KOR/OECD/FR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 and Trade(KIET),Computer Systems	002 KIET/KOR/OECD/FR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001 SMBA/KOR/OECD/FR
농업	Ministry of Agriculture - Statistical Information Bureau	001 AGR/KOR/OECD/FR
	Ministry of Agriculture - International Agriculture Bureau	002 AGR/KOR/OECD/FR
	National Agricultural Mechanization Research Institute	003 AGR/KOR/OECD/FR
	Rural Economic Institute	001 REL/KOR/OECD/FR
	Food & Drug Administration	001 KFDA/KOR/OECD/FR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001 RDA/KOR/OECD/FR
노동/사회/여성	Ministry of Labor - International Cooperation Division	001 LAB/KOR/OECD/FR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International Cooperation Division	001 MHW/KOR/OECD/FR
	Korea Labor Institute	002 LAB/KOR/OECD/F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001 HEA/KOR/OECD/FR
	Ministry of Gender Equality	001 MGE/KOR/OECD/FR
교육	Ministry of Education - International Cooperation Bureau	001 EDU/KOR/OECD/FR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002 EDU/KOR/OECD/FR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003 EDU/KOR/OECD/FR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001 RIVE/KOR/OECD/FR
	Institute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001 KICE/KOR/OECD/FR

분 야	기 관	계정 주소
건설/교통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001 MCT/KOR/OECD/FR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	001 RIHS/KOR/OECD/FR
정보/통신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001 MIC/KOR/OECD/FR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KISDI)	001 ISDI/KOR/OECD/FR
	National Computerization Agency	001 NCA/KOR/OECD/FR
행정 자치	Organization Planning Div.	001 MGA/KOR/OECD/FR
법 무	Ministry of Justice, 4th Prosecution Division	001 JUS/KOR/OECD/FR
환 경	Ministry of Environment -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001 ENV/KOR/OECD/FR
	Ministry of Environment - Chemicals Management Division	004 ENV/KOR/OECD/FR
	Korea Environment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002 ENV/KOR/OECD/FR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003 ENV/KOR/OECD/FR
문화/체육	Ministry of Culture & Sports - Planning Division	001 MCS/KOR/OECD/FR
과학/기술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 Technology Cooperation	001 MST/KOR/OECD/FR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002 MST/KOR/OECD/FR
	Korea Research Ins.of Bioscience & Biotechnology	001 KRIBB/KOR/OECD/FR
해양/수산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001 MMAF/KOR/OECD/FR
	Ministry of Mar.Aff.& Fis, Minister's office	002 MMAF/KOR/OECD/FR

분 야	기 관	계정 주소
해양/수산	Korea Maritime Institute	001 KMI/KOR/OECD/FR
통 계	National Statistical Office	001 NSO/KOR/OECD/FR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Statistical Information Division	002 NSO/KOR/OECD/FR
기획예산처	Planning and Budget Commission	001 PBC/KOR/OECD/FR
공 정 위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001 PAB/KOR/OECD/FR
국 회	Korea Fair Trade Commission	001 FTC/KOR/OECD/FR
총 리 실	National Assembly Library	001 LIB/KOR/OECD/FR
국무조정실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001 PMO/KOR/OECD/FR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analysis, evaluation & coordination)	002 PMO/KOR/OECD/FR
국 정 원	The Resear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RIIE)	006 MFA/KOR/OECD/FR
생산성본부	Korea Productivity Center	001 KPC/KOR/OECD/FR
금융감독위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001 FSC/KOR/OECD/FR
Kotra	Kotra	001 KOTRA/KOR/OECD/FR
석유공사	National Oil Corporation	001 OIL/KOR/OECD/FR
청 와 대	Cheong Wa Dae (M.HAN,Duck-Soo)	001 PRES/KOR/OECD/FR
금 용	The Bank of Korea	001 BAN/KOR/OECD/FR
	The Bank of Korea - Research Department	003 BAN/KOR/OECD/FR
	The Bank of Korea - Supervision Policy Department	004 BAN/KOR/OECD/FR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002 BAN/KOR/OECD/FR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 Underwriting Department I	001 EIC/KOR/OECD/FR

(자료 : 주OECD대표부 자료실)

다. 통계청의 OLISnet 활용실태

- 통계청은 현재 2개의 OLISnet 계정 (국제통계과 및 통계정보과에 각 1개)을 보유하고 있음. (<표 7-1> 참조)
 - 국제통계과 OLISnet : 공식 문서·논문 입수, 국제회의 관련 정보 입수
 - 통계정보과 OLISnet : OECD 공표 통계자료 입수 및 통계청 국제 통계 DB에 수록

4. OLISnet 가입방법 및 절차

가. OLISnet 가입자격

- OECD는 OLISnet의 가입자격을 원칙적으로 국제기구 및 각국의 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업무 관할부처인 외교통상부에서는 OLISnet 가입자격을 주로 정부 기관 및 정부산하연구소에 부여하고 있음.
 - 정부산하연구소 등 정부기관이 아닌 경우, 소속 정부부처의 추천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나. OLISnet 가입절차

- OLISnet 가입신청서 (OLISnet Subscription Form) 작성·제출
 - 신청서는 외교통상부에서 입수 가능
 - 가입희망기관이 외교통상부에 제출
 - 외교통상부내 소관과 : 국제경제국 경제기구과 (T. 02-720-2330)
- ※ 가입신청서 내용
 - 앞 면 : 국가명, 기관명, 주소, 연락처, 사용목적 등 (가입자 작성)
 - 뒷 면 : 가입자가 지켜야 할 규약 명시

- 가입자격 심사
 - 외교통상부 (경제기구조)는 신청기관의 자격 적격성 여부를 심사
- 가입신청서 OECD에 송부
 - 송부경로 : 외교통상부 → OECD 한국대표부 → OECD 사무국
 - OECD 한국 대표부 (Permanent Delegation to the OECD) 주소
: 2-4 rue Louis David, 75782 Paris Cedex 16 France
 - OECD 사무국내 소관과
: 집행총국(Executive Directorate)의 Information Technology and Network Services 과 (이메일 : olishelp@olis.oecd.org)
- Approval 신청기관에 송부
 - 송부경로 : OECD → 신청기관 (대표부나 외교부 경유하지 않음)
 - ID, Password 및 설치매뉴얼도 함께 송부

다. OLISnet 사용자가 지켜야 할 규약 <부록 VI 참조>

5. OLISnet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통계자료』 목록 (소관국별, 총 48종)

- AGR (식량 · 농업 · 수산물)
 - Agricultural Policies in Emerging and Transition Economies - Indicators(전환국가의 농업정책 - 지표)
 - The Agricultural Commodities Outlook Database (농산물전망DB)
 - Support Estimate Database(공급추정DB)
- DAFFE (금융 · 재정 · 기업국)
 - Taxing Wages (세금 · 수혜 통계)
 - Bank Profitability (은행수지통계)
 - Central Government Debt (중앙정부 부채통계)
 -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Statistics Yearbook (해외 직접투자통계연보)

- Interest Rates on International and Domestic Markets (국제·국내시장 이자율)
- Revenue Statistics (세입통계)
- DCD (개발협력국)
 - Creditor Reporting System (개도국채권보고)
 -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개발협력보고서)
 - External Debt Statistics (대외부채통계)
 -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inancial Flows to Aid Recipients (개도국으로의 재정금융흐름의 지역 분포)
- STI (과학·기술·산업국)
 - Activities of Foreign Affiliates in Manufacturing and Services (제조업 및 서비스업 외국기업의 활동)
 - Analytical Business Enterprise Research and Development (기업 R&D 통계)
 - Basic Science and Technology Statistics (기초과학·기술통계)
 - Bilateral Trade Database in ISIC Rev. 2 in US\$ (양국간 무역 DB - 구분류)
 - Input-Output in ISIC Rev.2 in national currencies (투입 산출표 - 구분류)
 - Input-Output in ISIC Rev.3 in national currencies (투입 산출표 - 신분류)
 -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주요과학기술지표)
 - New Structural Analysis Database in ISIC Rev.3 (STAN: 산업구조분석통계-신분류)
 - Old Structural Analysis Database in ISIC Rev.2 (STAN: 산업구조분석통계-구분류)

- ECO (경제국)
 - Economic Outlook (경제전망)
- ELS(고용·노동·사회국)
 -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국제인구이동통계)
 - Social Expenditures (사회지출통계)
- EDU(교육국)
 - Education at a Glance (교육통계)
- ENV (환경국)
 - Environmental Data Compendium (환경통계개요)
- STD (통계국)
 - Annual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OECD 국가의 국민계정)
 - Economic Accounts for Agriculture (농업경제계정)
 - Monthly Statistics of International trade (월별무역통계)
 - Key Economic Indicators (핵심경제지표)
 - Historical Statistics (장기시계열자료)
 - OECD Historical Statistics (OECD 장기시계열자료)
 - Indicators of Industrial Activity (산업활동지표)
 - Indicators of Industry and Services (산업 및 서비스지표)
 - International Sectorial Database (부문별 통계 국제데이터베이스)
 - Industrial Structure Statistics (산업구조통계)
 - Flows and Stocks of Fixed Capital (고정자본 플로우 및 스톡)
 - Labour Force Statistics (노동력통계)
 - Leading Indicators and Business Tendency Surveys (선행지수·경기전망)
 - Main Economic Indicators (주요경제지표)
 - Main Economic Indicators: Non-Member Countries (주요경제지표-비회원국)

- Quarterly Labour Force Statistics (분기별 노동력통계)
- Quarterly National Accounts (분기별 국민계정)
- Economic Indicators Transition Economies - Historical (전환국가경제지표-시계열)
- Structural Statistics for Industry and Services(산업과 서비스업의 구조통계)
- Services : Statistics on Value Added and Employment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통계)
- OECD Statistics o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서비스의 국제거래 통계)

6. OLISnet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요 『Documents』

○ STD (통계국)

- OECD 통계용어집 내용 검토
- 2002 OECD 무역지표 프로젝트
- ITS 2001 회의를 위한 OECD Questionnaire 결과
- 해외무역통계의 품질 기준
- Data Capture 관련 OECD 품질평가 조사표
- 국민계정과 국제무역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의 측정 관련 각국의 사례 질의

○ STI (과학·기술·산업국)

- 신규기업, 기업가 및 신규기업의 생존 관련 통계 - 덴마크의 경험
- 1990년대 ICT 투자와 경제성장 (OECD 9개국 비교연구)
- OECD 회원국의 생명공학(Biotechnology) 통계 (각국의 기존통계요약)
- 시장을 왜곡하는 조치들의 목록집
- 과학기술 종사 인적자원에 관한 워크샵
- ISIC, CPC 및 HS를 이용한 산업별·상품별 기업 분류

○ EDU (교육국)

- 교육 및 학습의 품질향상 : 효율적인 교사 유인·개발·유지

○ ELS (고용·노동·사회국)

- 한국의 노동시장과 사회안전망정책
- 국제이동의 경제적 영향
- 지속가능개발의 사회적 측면
- 중국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영향
- 이주자의 노동시장에의 흡수
- 인구보건투자 프로젝트 최종보고서

○ ECO (경제국)

- 1990년대 OECD 국가의 기업투자비율 증가
- 금융시장 자유화, 자산 및 소비
- 경쟁, 혁신, 생산성 증가 (이론 및 사례 검토)
- 핀란드 조세제도 개혁을 위한 선택

Ⅷ. OECD 주요 현안

Ⅷ. OECD의 주요 현안

1. OECD의 전반적 이슈

-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추진과 세계경제의 건전성 및 투명성 증진, 노령화사회, 정부부문의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는 e-government 정책 등이 OECD가 최근 주요하게 논의하고 있는 분야임.

2. 통계분야의 현안

- 신규통계 수요에 대응

통계 분야에 있어서는 지속가능발전, 비공식통계(non-observed economy), 생명공학통계(Biotechnology Statistics) 등의 통계 개발.

- 통계 품질 개선

고품질의 통계 자료원으로서의 신뢰 향상을 위해서 OECD에서 이용, 작성, 배포되는 통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 OECD 통계 프레임웍(Quality Framework)을 세우는 등 보다 신뢰성 있는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통계제공체계 개선

OECD가 국제기구 및 국가 통계 작성기관들과 주고 받는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자료 제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OECD 내부적으로 그리고 IMF 와 EUROSTAT 등의 다른 국제기구들과 공동 노력을 하고 있음 장기적으로는 각 국가 기관의 Internet 사이트를 통한 자료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되 단기적으로는 다른 국제기구와의 공통적 질의서 이용,

기존 On-line DB의 확장 이용 등 실행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

- 지난 6월에 개최된 OECD 통계 기관장 회의 (High Level Group meeting)에서도 통계의 품질과 OECD 통계 자료 제공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 졌음.(부록 III, IV장 참조) OECD 자료 제공 및 메타데이터의 교환과 관련해서 OECD는 공표에 관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Dissemination)의 구성을 위한 작업을 2002년 10월에 시작하였음.

부 록

- I. OECD 요구통계관련 관계기관회의
- II. OECD 통계 부문별 개발계획 주요내용
- III. 자료 및 메타데이터 수집: OECD의 미래 전략
- IV. OECD 통계에 대한 품질 프레임웍
(Quality Frame work for OECD Statistics)
- V. OECD 설립협정
- VI. OLISnet 관련 규정

〈부록 I〉 OECD 요구통계관련 관계기관회의

1. 제 2차 관계기관 회의

가. 개최일시 : 96. 2. 14.

나. 참석기관 : 통계청(통계기준과, 통계조정과)/ 재경경제원 대외
경제총괄과/ 과학기술처 기술조사과/ 교육부 전산
담당관실/ 문화체육부 국제관광과/ 농림수산부
기술협력과/ 통상산업부 전산통계담당관실/ 보건
복지부 전산통계담당관실/ 노동부 통계담당관실
/ 관세청 자료담당과/ 한국은행 금융통계과

다. 회의내용

(1) OECD 통계평가단 방한결과

(가) 전반적 내용

- 한국통계에 대한 본 방문단의 종합적인 인상은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이며, OECD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음.
- 국민계정, 소비자물가지수, 국제수지통계 등의 시의성(Timeliness)은 OECD 회원국의 평균 또는 그 이상의 수준임.
- 산업 및 무역분류(KSIC 및 HS/K)는 ISIC rev.3 및 HS 분류보다 더 상세함.
- 한국은 OECD 통계국(STD)이 필요로 하는 모든 부분의 자료를 생산하고 있음.

(나) 자료상의 제약점

- 한국은행
경상가격기준 분기별 GDP 자료는 내부에서만 사용되며 공표 되지 않음. 무역지수의 경우 분류체계가 SITC분류체계를 따르고 있지 않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는 농업부문과 정부부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비스 부문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2) OECD 통계작성현황에 대한 의견

회의에 참가한 대부분의 부처가 통계청에서 파악한 통계작성현황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표명했으며, 일부 부처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나타내었음.

○ 노동부

“노동통계에 관한 조사표”에서 실업등록통계항목은 7월에 고용보험이 실시되면 작성가능함.

○ 교육부

- 현재 교육부에서는 OECD, EUROSTAT, UNESCO 등 여러 국제기관에 중복적으로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이의 개선이 필요.
- 교육부소관통계는 교육평가원에서 작성하여 왔으나 동기관이 97년 12월까지 존속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향후 통계작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 교육부에서는 OECD 조사표상 용어의 한글표기를 통일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중이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용역을 줄 의사도 있어 예산 편성시에 고려해주시기를 재경원측에 희망.

○ 통상산업부

- 통산부에서도 대다수의 통계가 산하단체 및 연구소에서 작성되는 관계로 통계의 개편 및 개발 작업을 추진하기에는 예산, 인력 등의 여러 문제가 있음을 표명.

- 해외투자기업의 산업활동통계의 경우 그동안 미작성이
었으나 96년부터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과학기술처

- R&D 통계의 경우 표본설계에 관하여 통계청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움을 얻기를 희망

▶통계청 : 해당과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의

○ 문화체육부

관광계정의 경우 한국은행 등과의 협의를 통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한국은행

- 한국은행 소관통계의 경우 미작성되는 부문이 주로 분
류의 세분화와 관계되어 개선에 어려움이 많음.
- 한국은행 소관통계의 경우 타기관 작성 자료도 있는 만큼
이의 작성을 위해 필요시 통계청의 협조를 요청하겠음.

(3) 각 기관 작성 통계의 개선, 개발 관련 요청사항

- 자체 통계발전 계획 수립시 OECD 기준에 맞추어 계획 수립.
- 각 부처의 OECD 파견자를 통하여 OECD 관련 자료 입수.

2. 제 3차 관계기관 회의

가. 개최일시 : 97. 6. 10.

나. 참석기관 : 재정경제원 대외경제총괄과/ 내무부 재정경제과/
법무부 기록관리과/ 국방부 연금과/ 교육부 교육
조사통계과/ 문화체육부 국제관광과/ 농림부 통계
정보기획담당관실/ 통상산업부 전산통계담당관실/

정보통신부 정책총괄과/ 환경부 전산통계담당관실/
 보건복지부 전산통계담당관실/ 노동부 통계담당
 관실/ 건설교통부 국제협력과/ 해양수산부 전산
 통계담당관실/ 총무처 급여과/ 과학기술처 기술
 조사과/ 국세청 기획예산담당관실/ 관세청 정보
 관리담당관실/ 경찰청 교통안전과/ 산림청 임정과/
 특허청 국제협력과/ 한국은행 조사2부

다. 회의내용

○ 경찰청

현재 통계청에서 OECD 통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수준
 은 어느 정도이며, OECD에서 각 부처에 직접 통계자료를
 요청하고 있는지?

▶현재 통계청은 OECD 통계에 대한 조사표를 확보하고 있
 으며,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음.

○ 재정경제원

- 통계청이 총괄기관으로서 OECD 통계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WTO 회원국으로서 WTO 217개 의무조항 내용
 에 대한 정밀검토 작업이 없었다가 얼마전 재경원 주재로
 관계기관회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의무 이행 수준을 파
 악한 바 있음. 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오늘과 같은 회
 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 통계청이 지금까지 OECD 통계부문에 기울인 노력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각 부처의 전반적인 OECD 통계현황
 을 파악하고, OECD 통계의 개선 ·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의 통계발전을 가져오기를 기대함.

○ 정보통신부

같은 항목의 자료요구에 대해 각 부처에서 상이한 통계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OECD에 제공하기 전에 통계청이 각 부처의 자료를 취합, 조정하여 보내는 것이 어떤지?

- ▶ OECD 각 국(Directorate) 및 위원회는 각자의 필요에 의해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구하고 있음.
- ▶ 제공된 자료를 통계청에서 취합하여 간행물로 발간·배포함으로써 국내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 ▶ 문화체육부외에 몇 개 부처에서 활발하게 OECD 통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관기관이 책임을 지고 OECD 통계를 작성·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통계청의 기본입장임.
- ▶ 과학기술처: 같은 항목에 대한 자료요구라 할지라도 OECD 각 국(Directorate) 및 위원회간 정의가 상이하므로 어느 한 부처로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은 무리이며 원칙적으로 분산적인 자료제공을 해야 할 것임.
- ▶ 문화체육부: OECD 국제회의에 수 차례 참여해본 경험에 의하면 OECD 각 국 및 위원회는 별개의 전문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통계청에서 일괄적으로 통계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생각함.(우리나라는 각 부처별로 통계가 생산되는 분산형 체제임)

○ 과학기술처

- 해당부처 직원의 OECD 관련회의 참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바 재경원과 통계청이 협력하여 각 부처 OECD 회의 참가여비를 늘려주어야 할 것임.
- 통계작성 기술·지식 습득을 위하여 통계청의 일반 통계 교재를 얻을 수 있는지?

- 통계청 Home Page를 통한 자료제공의 다양화가 필요함.
- 대외경제연구원이 상당히 많은 OECD 통계자료를 축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기관도 정보를 함께 공유할 방법은 없는지(OLIS 포함)?
- ▶ 관련부처 요구시 통계연수원 교재 제공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 ▶ 통계청 Home Page의 내용을 계속 보강할 예정이며 OLIS 문제도 대외경제연구원과 상의한 바 있음. 앞으로도 타 기관과 통계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임.

○ 총무처

- 현재 작성되지 못하고 있는 통계를 당장 모두 작성해야 되는지?
- 80종 통계에 대한 비교표와 개선·개발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OECD에 제출할 것인지?
- ▶ OECD 통계 전부를 당장 각 기관에서 개선·개발 또는 제공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현 작성 수준에서 작성·제공하면 됨.
- ▶ 비교표 작성과 개선·개발 등에 관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은 OECD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내통계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환경부

- OECD 통계의 개선·개발을 위한 통계청의 종합기능적 역할은 필요하다고 봄.
- OECD 환경통계의 종류는 1종이나 항목은 1,150여개나 됨.

- 현재 OECD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21% 정도 제공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임.
- 전반적인 OECD 통계의 현황 파악 및 각 부처의 의견 불일치 시 이에 대한 조정이 통계청의 주요역할이 되어야 할 것임.

○ 한국은행

- 오늘과 같은 회의는 중요하며 통계청이 전반적인 OECD 통계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됨.
- 현재 8종은 100% 제공 가능하며 12종은 50%정도, 나머지 2종에 대해서는 2~3년내 작성 가능.(수년내 98% 수준까지 제공가능)
- 2종중 고정자본 stock 통계는 통계청의 국부조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 국부통계는 앞으로 간접추계 방식을 고려중이며 최대한 통계청에서 협조할 것임.

○ 통상산업부

-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를 전부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 국내에서 공표되고 있지 않은 통계자료를 OECD에 제공할 수 있는지?
- ▶ OECD에 통계를 제공하는 문제는 각 부처의 판단하에 국익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번 의제와는 별도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통계청이 비 정부기관 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각 주관기관 스스로 회의를 가지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3. 제 4차 관계기관 회의

가. 개최일시 : 97. 9. 5.

나. 참석기관 : 통계청(인구조사과, 산업통계1과, 산업통계2과, 유통통계과, 자료관리과, 국제통계과)/ 재정경제원 대외경제총괄과/ 교육부 교육조사통계과/ 문화체육부 국제관광과/ 농림부 통계정보기획담당관실/ 통상산업부 전산통계담당관실/ 정보통신부 국제기구담당관실/ 환경부 전산통계담당관실/ 보건복지부 전산통계담당관실/ 건설교통부 국제협력과/ 해양수산부 전산통계담당관실/ 과학기술처 기술조사과/ 관세청 정보관리담당관실 / 한국은행 조사2부

다. 회의내용

「OECD 통계항목 비교표」 작업 진행상황 및 「OECD 통계 개선·개발 계획(안)」 작성요령 설명

○ 재정경제원

- 소관통계는 8종이며, 보험, 세입, 개발원조 등 3부문으로 구분됨.
- 이중 개발원조 부문의 통계는 총 5종인데 '97 6월 OECD/DAC 에서 요구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조사표가 기존 5종 통계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을 파악했음. 따라서 ODA 조사표를 이용, 「OECD 통계항목 비교표」 작성 중에 있음.
- 보험통계는 보험제도과에서, 세입통계는 조세정책과가 주관 이 되어 비교표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음.

○ 교육부

- 소관통계는 2종이며 이미 3년간 OECD에 자료를 제공한

적이 있어 내용과약은 잘 되어 있음. 따라서 「OECD 통계 항목 비교표」의 작성은 9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음.

○ 문화체육부

소관통계는 2종이며, 잘 진행되고 있음.

- ▶ 통계청 : OECD에서 부정기로 요구했던 국가관광통계는 OECD 국가관광통계의 한 부분이므로 별도의 비교표 작성이 필요 없음.

○ 농림부

소관통계는 3종임. '96 5. OECD에서 농업통계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 제출하였음. 이 조사표에는 기존 3종의 통계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비교표 작성시 이 조사표를 이용하고 있음.

○ 통상산업부

소관통계는 18종임. 조사표가 아직 입수되지 않은 전력생산 비용통계 등 2종의 통계를 제외하고는 9월말까지 비교표가 차질없이 작성될 것임.

○ 정보통신부

소관통계는 2종임. 이 중 통신통계는 비교표 작성에 별 어려움이 없음. 그러나 2년마다 작성하는 정보기술통계는 설문조사 형식이며 가정, 교육, 금융기관의 정보기술 이용 등 OECD의 관심분야에 따라 수시로 내용이 변경되고 있어 비교표 작성대상 통계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 ▶ 통계청: 정보기술통계의 경우 확정된 조사표가 없으므로 비교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기 바람.

○ 환경부

소관통계는 환경통계 1종임. 『OECD 통계업무 추진계획』 장기발전 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이 계획(안)에는 조사표의 부록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며 용어 선택에 있어서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새로 입수된 '96년도 조사표를 이용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보완작업을 하고 있음.

○ 건설교통부

소관통계는 1종임. 부내 2개 과와 경찰청의 협조하에 잘 진행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소관통계는 3종임. 보건통계의 경우 금년 3월에 이미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내용 검토작업이 끝난 상태임. 보건통계는 1,091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900여개 항목이 보건이고 기타 항목은 복지부문임. 비교표 작성에는 별다른 애로사항 없음.

○ 해양수산부

소관통계는 2종이며 비교표는 잘 작성되고 있음. OECD 수산위원회에서 연차보고서에 수록할 자료를 요구하여 금년 7월에 제출하였음.

▶ 통계청: OECD에 추가제공한 통계도 비교표를 작성하기 바람.

○ 과학기술처

소관통계는 3종이며 이들 통계의 비교표 작성은 거의 완료된 상태임.

○ 관세청

소관통계는 상품별 무역통계 1종이며 비교표 작성에 별 어려움이 없음.

○ 한국은행

- 소관통계는 22종임. 국민계정은 17,000여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교표 작성시 상당한 시간을 요함. 현재 국민소득을 추계중에 있어 본격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추계업무가 끝나는 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일정 내에 비교표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음.
- 공해감소 및 통제지출통계는 완료됐으며 국제수지도 비교표 작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임.
- 서비스분야의 국제거래 통계중 국가간 철도를 이용한 거래 실적을 작성하는 내용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를 이용한 국가간 거래가 거의 없어 이를 개선 개발 대상부문으로 표시할 필요가 없을 것임.
- 고정자본 플로우 및 스톡통계의 경우 플로우 부문은 작성 가능하나 스톡부문은 관련 통계인 국부통계를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으므로 플로우와 스톡 부문을 구분하여 스톡 부문의 주관기관은 통계청으로 하는 것을 검토 바람.
- 별도의 조사표 없이 주요경제지표 간행물을 이용 분석하고 있음. 금융시장동향 등 2종의 통계에 대해서는 세부 작성기준을 파악을 위해 노력중임.
- ▶ 통계청 : 통화지표 등 2종의 조사표가 별도로 존재하는 지는 확인해 보겠음. 아울러 고정자본 플로우 및 스톡 통계 중 스톡 부문을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방안은 검토 후 통보하겠음.

4. 제 5차 관계기관 회의

가. 개최일시 : 98. 4. 15.

나. 참석기관 : 행정자치부급여과/ 교육부 교육행정전산통계과/
과학기술부 기술정보과/문화관광부 관광기획과/

농림부 정보통계기획담당관실/ 산업자원부 전산
 통계담당관실/ 정보통신부 국제기구과/ 보건
 복지부 정보화담당관실/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
 / 노동부 정보화담당관실/ 건설교통부 국제협력과
 / 해양수산부 전산통계담당관실/ 산림청 임정과/
 한국은행 조사2부 금융통계과/

다. 회의내용

○ 행정자치부

- OECD 통계개념의 명확화 및 객관적인 자료제공을 위해
 유관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 정부의
 직종별 피용자보수 통계는 행정자치부 관할이 아닌지 ?
- 통계청에서 OECD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 예산을 부처별로
 수요 파악한 후 일괄 확보 방안 강구 요청.

▶ 통계청 : OECD 통계개발의 책임주체는 주관기관이며 필
 요시 관계기관간의 협의체 구성 및 협조기관인
 예산청, 구내무부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통계청도 필요시엔 통계자료 제공 등을(예 : 도시
 가계 자료 등) 적극 지원할 예정임.

▶ 한국은행 : 정부의 직종별 피용자보수 통계는 구매력지수
 작성을 위한 국민계정 관련 통계이며 직종별
 피용자 보수를 이용한 구매력 지수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육부

교육부는 92년부터 OECD의 교육통계지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OECD 해당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

○ 문화관광부

- 현재 관광연구원에서 국제관광통계 개선방안을 연구중이며, 44개 테이블에 대해 미흡하나마 약 20%를 제공하고 있음. 단기적으로 98년 12개 항목을 개발할 예정이며 중장기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의(보건복지부 또는 법무부) 협조가 필수적임.
- 현재 한국은행 주관통계로 되어 있는 관광계정은 98년중 구축하여 99년에는 OECD에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산업자원부

현재 사업자원부 소관통계에 대한 개발계획은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음.

- ▶통계청 : 정부부처 중에서는 제일 많은 15종의 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자원부는 작년부터 기획관리실장을 중심으로 5개 실무작업반을 구성 적극적으로 개발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OECD에서 동일자료를 요구 중복제공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 이의 해결 방안은? 중복자료의 자료제공시 동일한 기준 적용 및 같은 수치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 ▶통계청 : OECD의 분산적 특징으로 인해 현재 전체적인 입장에서 통계의 중복제공을 조정할 기구가 없어 회원국에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음. OECD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공통 DB 구축 등을 통해 문제가 해소되리라 생각됨. 동일자료 요구에 대해 다른 수치가 나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OECD 가입 이후 각 부처가 OECD에 제공한 통계를 통계청에서 취합, 각 부처에 배부함으로써 중복 제공시 에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노동부

- 노동부에서는 통계청의 노동력 통계에 대해 협조기관의 입장에서 산업중분류 고용결과를 사업장 단위자료로 제공해 주고 있음.
- 통계청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대체통계를 개발할 때까지 자료제공하는데 문제없음.
- OECD 요구통계에 대해 100% 작성하여 제공해 주어야 하는지?
▶ 통계청 : OECD 회원국중 어느 나라도 100% 작성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선진국 수준을 간행물로서 간접 추계 해보면 약 85-90%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음.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항목을 제외한다면 그 정도 수준이 우리의 개발목표가 될 것임.

○ 해양수산부

수산업통계는 현재 99.5% 작성되고 있으며 어업기본통계 조사를 통해 어업종사자를 full-time, part-time으로 나누어 개발 추진.

○ 산림청

환경통계의 부분으로서 산림청은 78개 항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중임.

○ 건설교통부

소관통계는 국제도로 및 사고통계 1종으로서 8개의 소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당초 3개 항목이 작성되지 않아 단기 및 장기과제로 설정했으나 98년 개발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

○ 환경부

- 환경통계는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수량, 토지 부분 등에서 타 기관의 협조가 잘 안되고 있음.

- 97년 환경통계 장기발전 계획수립시 부문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통계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항목별 통계 작성이 쉽지 않음.
- ▶ 통계청 : 건교부 등에서 수량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부수적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임. 환경부 입장에서는 관련 부처의 특정사업을 통해 간접적인 부산물로서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독려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 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
- 정보통신부
 - 99년 통신전망을 제공할 예정이며 차질 없이 개발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농림부
 - 농림부통계는 현재 차질없이 생산, OECD에 제공하고 있으며 타기관에서 작성하는 OECD통계도 만약 농림부와 관련 있다면 즉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구.
 - ▶ 통계청 : 장기적으로 OECD 제공통계의 DB구축을 통하여 전 기관이 자료를 이용토록 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부
 - 기술수지통계의 경우 기술도입은 재경부 및 한국은행의 협조를 받아 정확한 data를 작성하고 있으나 기술수출의 경우 작년 survey에도 불구하고 정확도 높은 자료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음.
 - 향후 정확한 통계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통계청의 많은 지도를 기대함.

○ 한국은행

- 98년 현재 국제수지통계를 IMF 5차 개정판에 맞추어 개발 완료했으며 월중금융통계의 경우 가계 신용통계를 금년말 까지 작성할 예정임.

<부록 II> OECD 통계 부문별 개발계획 주요내용³⁾

재정 · 금융 · 물가

<1단계 : 98년 >⁴⁾

- 외국인 소유물건의 국내 재보험료, 외국인 소유 해외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액 조사 (재경부)
- 교통 및 통신비 가정용 오락기구 등 가격 특별조사 (통계청)
- OECD 기준(IMF 5차개정)에 따른 국제수지 작성 (한국은행)
- 가계신용통계 작성 (한국은행)

<2단계 : 99~2000년 >

- 가구 및 식탁용품, 보건서비스 등 품목별 가격특별조사(통계청)
- 장·단기 채권의 거래대상자별 분류, 대출금의 장단기 구분을 위한 법인기업의 금융거래 조사(한국은행)

3) 관계기관의 회의를 통해서 확정된 「OECD통계 종합개발계획」(98년, 통계청)의 단계별 개발계획의 내용임

4) 단계별 선정기준

- 1단계: 98년

- 기존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재집계 또는 결과 분석을 통해 작성할 수 있는 항목
- 기존 통계의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의 개선 등을 통하여 생산가능한 항목

- 2단계: 99-2000년

- 새로운 조사 또는 행정자료를 통해서 작성될 수 있는 통계
- 기존 통계조사의 체계변화가 요구되는 통계

- 3단계: 2001년 이후

- 대규모의 인력 및 예산 투입이 필요한 통계
- 통계제공시 국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통계

- 기업부문의 산업별 오염매체별 환경오염 방지지출액 추계(한국은행)
- 개인 및 문화서비스 등의 교역통계 작성(한국은행)
- 은행 자산·부채 항목의 거주자 및 기준통화별 분류작성(한국은행)

< 3단계 : 2001년 이후 >

- 농가경제통계의 농가자산 분류체계 조정(한국은행)
- 외환 수급통계에 국외경상이전 수취 및 지급을 제도부문별로 구분하여 작성 (한국은행)
- 소유자별 총고정자본형성 항목작성을 위해 기업경영분석통계의 업종분류 세분화(한국은행)

광공업 · 에너지

< 1단계 : 98년 >

- 석유제품가격지수 개발(산자부)
- 외국인투자기업 및 해외투자기업의 산업활동 조사(산자부)
- 총열생산량 및 열병합 발전량 작성(산자부)
- 화석연료에 의한 열생산량 작성(산자부)
- 차량용 경유사용량 작성(산자부)
- 기계류 신수주 및 수주잔고의 수주자분류별 재편제(통계청)
- 사업체의 가동률, 경기합성지수 등의 전망자료 작성(한국은행)

< 2단계 : 99~2000년 >

- 월별 산업 및 에너지부문별 열소비량 작성(산자부)
- 석탄제품가격지수 개발(산자부)
- 에너지가격지수 개발(산자부)
- COKING COAL 의 코크스, 전로가스 등으로의 전환통계 작성(산자부)
- 전산업의 기업단위 모집단 자료 개발(통계청)

< 3단계 : 2001년 이후 >

- 태양열, 특허연료, 역청탄 등의 에너지량 작성(산자부)
- 석탄에너지열량체계 구축(산자부)
- 철강의 출하실적 금액, 전체 신규주문실적 작성(산자부)
- 외국인투자기업 및 해외투자기업의 산업활동통계 추가 작성(산자부)
- 폐지회수량통계 작성(산자부)

인구 · 노동 · 임금

< 1단계 : 98년 >

- 실업자정의중 구직기간을 OECD 기준(4주)으로 조사(통계청)

< 2단계 : 99~2000년 >

- 구매력지수(PPP) 작성을 위한 정부의 직종별 피용자보수통계 작성(한국은행)

- 구매력지수(PPP)작성을 위한 공공비영리병원의 피용자보수 통계작성(한국은행)

<3단계 : 2001년 이후 >

- 공공부문의 노동비용 작성(행자부)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시간제 고용자수 작성(행자부)
- 산업중분류별 취업자통계 작성(통계청)

과학 · 기술 · 교육

<1단계 : 98년 >

- Part time 학생 및 교사 · 교수수, 연령별 외국인 학생수 조사(교육부)
- 지방정부 교육지출액, 학생대여금 조사(교육부)
- 광케이블 구축거리, 통신제조업체 고용자수 작성(정통부)
- 교통망별 도로길이 및 교통사고 통계 작성(건교부)
- 기업부문을 포함한 사회 · 경제부문별, 목적별 연구개발비 작성(과기부)

<2단계 : 99~2000년 >

- 고등교육기관의 연령별 외국인 신입생 및 졸업생수(교육부)
- 교육비 지출액의 세분 작성(교육부)
- 인문 · 사회 연구기관의 R&D 조사(과기부)
- 정부 R&D 예산의 사회 경제부문별, 수행주체별 배분의 조사 방법 연구 및 개발(과기부)

< 3단계 : 2001년 이후 >

- OECD 분류기준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전공별 학생수 작성 (교육부)

보건 · 환경

< 1단계 : 98년 >

- 건강상태, 의료재료 수출입 자료의 DB 구축(보건부)
- 하천관련 자료의 DB 구축(환경부)
- 생활폐기물의 발생원별 구분 작성(환경부)

< 2단계 : 99~2000년 >

- 소음에 노출된 인구수 조사(환경부)
- 화학물질 유통실태조사 실시(환경부)
- 폐기물 수출입통계 작성(환경부)
- 유해 화학물질 환경배출량 조사(환경부)

< 3단계 : 2001년 이후 >

- 원격탐사, 지리정보시스템 모델링 기법의 개발(환경부)
- 오염매체별, 산업별 환경오염 피해 및 유발계수 작성(환경부)

농림 · 어업

< 1단계 : 98년 >

- 우유시판가격의 도·소매 가격 작성(농림부)

- 유채 및 유채유 생산자 가격 작성(농림부)

< 3단계 : 2001년 이후 >

- 어업 종사자를 full time, part time제로 구분 조사(해양부)

관광 · 기타

< 1단계 : 98년 >

- 외래관광객을 비즈니스 및 개인여행으로 구분 작성(문화부)

< 2단계: 99~2000년 >

- 해외교포의 국내여행 현황 작성(문화부)
- 국가별 외래객 평균 체재일수 조사(문화부)
- 국제여행객운임 수입 · 지출액 작성(문화부)
- 관광산업종사원 현황 작성(문화부)

< 3단계 : 2001년 이후 >

- 호텔 및 레스토랑 요금, 여행가격 지수 작성(문화부)
- 총 외래객 입국자수 및 국가별 관광객 수 작성(문화부)
- 월별, 국가별 호텔관련 시설 도착자수 및 숙박일수 작성(문화부)
- 국가별 여행 수입 및 지출액 작성 (문화부)

〈부록 III〉 자료 및 메타데이터 수집: OECD의 미래 전략

현재 OECD의 자료 요구⁵⁾

OECD는 회원 및 비회원국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다양한 양과 주기로 정보를 받음. OECD는 두 가지 셋트의 자료를 요구.

- 연간 국가경제조사(annual country economic survey)처럼 정부에 의해 공식적 통계로 간주되는, 국가기관에서 간행된 것과 실제로 같은 자료 요구
- 생산성 경향분석처럼 국제 비교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임. 통계가 그러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조화되어있거나 그런 조화된 자료가 없는 경우 메타데이터(metadata)⁶⁾의 제공

OECD의 자료요구 범주(Categories)

- 월별, 분기별 경제지표들:
전망(Outlook) 및 국가조사의 준비를 위해 경제국에 의해 주로 이용되는 자료
- 연간의 기본적 경제·사회 통계들:
연간 국민계정, 노동력 자료 등 특정국가의 분석과 국제 비교를 위해 요구되며 비교 가능한 수치를 생산하기 위해 자료의 변형이 있기도 함.
- 연간 또는 임시로 수집되는 특정 경제, 사회 및 환경적 변수에 대한 통계 수치(statistical figure):
일반적으로 이런 자료들은 국가의 정의나 분류를 사용하여

5) 부록에 수록된 OECD HLG 회의 Paper는 OECD홈페이지(www.oecd.org) Statistical Portal-Documentation-Event/Conference/Meeting에서 원문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음.

6) Metadata: Metadata describes statistical data and to some extent, the processes and tools involved in the production and usage of statistical data.

기존의 국제 기준없이 생산됨. Metadata의 수집과 자료를 더 비교성있게 하기 위한 OECD 각국의 노력이 요구됨.

- 국가통계기관이 아닌 기관들에 의해 매년 또는 때때로 수집되는 통계:
이런 자료는 잘 세워진 통계문화(Statistical culture)나 기존의 국제통계기준의 준수 없이 각 기관에 의해 수집되는 행정적 활동의 부산물로 메타데이터가 이용가능하지 않음.
- OECD에 의해 설계된 조사를 수행하는 국가 통계기관 또는 다른 정부기관들에 의해 매년 또는 가끔씩 수집되는 자료
- 전자적 네트워크를 통해 OECD에 보내지는, 일반적으로 국가 통계 기관에 의해 생산되는 microdata

OECD 자료요구의 한 중요한 측면으로 메타데이터 수집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기관들 사이의 자료 교환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면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지만 메타데이터 교환은 그렇지 못함. 국가 기관들이 자료와 메타데이터를 그들의 DB에 연결시켜 놓지 않았기 때문에 메타데이터의 전송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짐.

OECD 자료수집 관행

OECD의 자료수집은 OECD 각국(Directorate)과 국가기관, 다른 국제기구들이 개별적으로 양자적 관계로 발전시켜온 OECD의 분산화된 체계와 자료처리 속성을 반영하며, 사용되는 기본적인 수집매체는 다양함.

최근 5년간 자료 및 메타데이터의 수집과정은 질의서를 받고 파일을 직접적으로 교환하는 것과 On-line Databases (일반적으로 websites)에 요구되는 정보를 올려놓는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음. OECD는 현재 각국과 자료 제공 기관간의 양자적 기본에서 파일의 직접 교환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나 On-line 방식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메타데이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OECD에 의해 수집되고 있음.

다른 국제기구와의 조정

모든 국제기구들은 회원국으로부터 보고 부담 감소와 효율성 증가라는 압력에 직면하고 있음. 다른 국제기구와의 추가적인 조종 수행과 자료 교환 절차와 관련되는 것을 포함하는 국제 기준의 발전의 두 영역에서 개선 추진

■ 현재의 조정

국제기구들 간에 많은 양자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의 조정 형식을 띤.

- 다른 국제기구를 대신해 한 기구가 국가 제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처리
 - UNSD와 OECD사이에서 연간 무역 자료의 수집
 - UNIDO와 OECD사이에서 산업부분의 자료수집
 - Eurostat와 OECD간의 표준화된 실업률의 수집 및 공표
- 국가기관들이 동일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다른 국제기구에 파일 보냄
 - EU국가들이 국민계정자료를 OECD와 Eurostat에 보냄
- 다른 국제기관들이 직접 각국의 On-line DB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사용

UN/ECE 지역의 통계활동의 통합 프리젠테이션들 내에서 IMF, OECD, World bank, UNECE, Eurostat의 연간 작업은 국제기구

들간에 양자적 조정을 강화시킴. 자료 요구의 중복은 어떤 경우
앞으로 조정의 개선에 의해서 단순히 제거될 수 있으나 시의
성, 분류, 정의에 있어 각 국제기구의 필요성의 차이는 복잡한
상황임.

조정에 있어 핵심적 문제는 자료 공유에 포함되는 고위수준의
노력이며 국제기구의 내부 구조의 차이에 의해서 때로는 한 조직
내에서 다중적 동의가 요구되기에 상황이 훨씬 복잡.

명백한 중복의 또 다른 이유는 국가 기관들에 의한 통계의 불
충분한 조화임. 비록 지난 30년간 개발된 광범위한 국제적 통계
기준이 방법론적 차이의 범위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차이는 존재함. 어떤 국가 자료의 변형이 국가비교를 위해 요구
되기 때문에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나오는 최종 결과는 다를 수
있음.

■ 국제기준에 대한 현재의 작업

국제기구간 협력과 조정에 있어 핵심적 분야는 자료와 메타
데이터의 전송에 있어 표준화된 메시지(messages) 개발과 관련
된 국제적 지침과 권고의 개발임. Eurostat는 GESMES를 사용하나
모든 Eurostat 회원국에 의해 채택되지는 않음.

공통적 메시지와 형식 채택에 있어 중요한 장애는 공통적인 메타
데이터는 소수의 주제(예를 들어 국민계정)의 경우에만 개발되었
다는 것으로 효율적인 자료 및 메타데이터의 교환을 촉진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METIS**, **SDMX** 그리고 **METANET**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음.

- **METIS** : UNECE의 주창으로 연간 미팅에는 Eurostat, ILO,

IMF, OECD, UNECE, UNSD 와 많은 국가통계 기구 대표들이 참가.

- SDMX : SDMX 프로젝트의 목적은 IMF 등의 국제기구들이 지원하는 집합적 활동의 현재 범위내에서 자료와 메타데이터의 공유 및 교환 과정의 효율성 증진임.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공통된 e-standards와 진행중인 표준화 활동을 시험하고자 함.
- METANET : 국가통계기관, 공식통계의 사용자, 통계처리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타데이터와 방법론, 정의 등을 조화시키려는 개발자들의 network임.

향후 OECD의 자료수집 전략

OECD 자료 수집의 개선은 자료를 받는 기구와 자료를 제공하는 국가 기관, 국제 기구의 두 측면을 고려해야 함 OECD 내부조정 확대와 자료교환 과정의 효율성 개선이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질 필요가 있음. OECD 자료 수집정책은 다음의 광범위한 원칙들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함.

- OECD에 의해 요구되는 자료와 메타데이터는 그 기구에 가입했을 때 각 국가의 공식적 의무의 맥락에서 OECD에 제공.
- 국제기구와의 통계 관계의 조정을 맡고있는 국가 기관은 OECD의 자료요구에 대한 잘 체계화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짐.
- 자료와 메타데이터의 교환은 OECD와 제공기관의 기술적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 수단을 사용.

- 자료교환활동은 사용자의 요구 및 이용가능한 기술과 자원을 고려해 OECD내에서 그리고 다른 국제기구의 유사한 활동 조정.

OECD내 각 국에 의한 수집자료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자료 수집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적 자료수집 제거가 어려운 상황임. OECD Statistical Work Programme questionnaire의 정보 수집에 의해 이러한 문제점은 제거될 수 있으나 일시적 자료수집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보를 수집하지 않음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실제 사용자의 요구에 대한 특별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함.

장기적 전망- 적절한 자료공표 모델

장기적 측면의 개선은 국제기구간의 공통적 자료파일 또는 제공기관 On-line DB의 확장된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계속적 자료수집활동에서 직면할 수 있는 요청과 관련하여 세 개의 공표 모델이 가능.

- 자료제공 기관이 국제기구에 각기 다른 파일을 보냄
가장 일반적이며 제공기관의 부담이 극대화됨. 관련기구에 동일한 파일을 보내면 제공기관 관점에서는 가장 효율적이지만 국제기구 사이에 내용, 형식 및 매체에 대한 조정이 전제로 됨.
- 한 국제기구에 보내진 자료의 다른 기구로의 재분배
국제기구 사이에서 내용, 형식, 매체 등의 조정을 전제로 이 모델은 현재 EU, Eurostat 그리고 OECD 가입국가들의 국민 계정 전송에 사용됨. 이경우 각 국가 제공자와 국제기구와의 직접적 접촉의 부재가 큰 단점임.
- 자료 공유(Data-sharing)
정보제공기관이 자료를 많은 국제기구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장고(단순히 인터넷일 수 있음)에 올리는 것임. 중요한 이 점은 자동적 자료추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공통적 저장고로 사용될 수 있으나, 자료제공자와 수집자의 사이에 높은 수준의 동의와 조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실행가능하지 않을 것임.

■ 공통자료 파일의 확장 사용

공통적 자료 파일의 확장 사용을 위한 전제조건은 다른 국제 기구간에 자료 요구에 있어서 협력임. OECD통계국은 OECD, IMF, Eurostat and UNSD의 단기경제 지표에 대한 요구를 2002년동안 분석할 것인데 이 연구는 이 기구들에 의한 공통적 요구와 국가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전송과정의 유형을 밝힐 것임 또 다른 프로젝트가 OECD, IMF, Eurostat에 대해 주요한 단기 aggregate 경제지수에 대한 자료교환의 조정을 위해 진행중임.

■ On-line DB의 확장 사용

국제기구의 자료 요구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국가 On-line DB에 직접적 접근이 자료 수집 조정에 있어 가장 좋은 장기적 해결책임. 적절한 DB 개발을 격려하는 과정은 국제기구의 일련의 특정한 권고와 지침 형성에 의해 촉진될 수 있음.

확장된 사용 모델의 전제조건:

(DB의 이용가능성과 국제기구의 접근가능성은 별도로 고려)

- 제공기관에 의해 수집된 넓은 범위의 단기 자료와 연간 자료
- 시의성 있는 자료, 즉 제공기관의 공표일에 DB에서 자료의 이용가능성
- 적절한 길이의 시계열 제공
- DB의 하부구조내에 메타데이터의 제공

- 자료와 메타데이터의 효율적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설비의 제공.(이것은 자동화된 자료추출과정의 사용가능성을 포함)
ex) Eurostat의 New Cronos

자료수집 개선을 위한 단기적 행동

■ 현재 On-line DB의 확장사용

제공기관의 On-line DB에 접근을 확장하고 DB상의 자료와 메타데이터 범위를 확장하고, 효율적 자료 추출의 도구를 제공. 단기적으로 현재의 On-line DB 사용을 확장하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은 각 국가들이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시리즈에 대한 자신들 DB에 있어 공통적 형식(format)을 채택임. SNA93, ESA95의 집행에 있어 OECD와 Eurostat는 국민계정의 공통적 질의서를 개발했는데 그것은 자료 정의에 있어서 국제적 표준을 함축적으로 소개함.

별로 비용이 들지 않는 추가적 단계는 현재 시스템을 완전히 성숙된 자료의 국제기준으로 바꾸는 것임. 어떤 사용자도 web을 통해 비교 가능한 자료를 얻을 수 있고 이런 단순한 단계는 각 국가들이 자신들의 공개 DB에 그 형식을 채택하고 국가들은 자신들의 국가사용자들을 위해 자기들만의 자료공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음.

■ OECD내의 개별적 조정과 다른 국제기구와의 조정 확대

OECD 내부적 조정을 앞으로 개선. OECD 통계정책그룹(Statistical Policy Group) 회원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OECD reference series의 개선에 대해 작업이 시작됨.

■ 다른 수집도구와 과정의 효율성 개선

- 현재 손으로 하는 자료 추출과정을 좀더 자동화된 절차로 대체 될 수 있는 특정한 영역을 밝힘.(통계국은 최근 Web file이 Excel spreadsheet로 열려있으면 빠른 자료의 추출을 가능하게 하는 자동화된 설비를 개발)
- 제공기관에 특정한 문제 영역과 비효율적인 자료흐름 과정에 대한 환류의 체계적 제공.

OECD 교육·고용·노동·사회국(Directorate for Employment, Education, Labour and Social Affairs)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또 다른 대안은 현재의 연간 질의서를 국가 미시(micro) 파일에의 간접적 접근으로 대체하는 것이며(미시적 수준 DB에 직접적 접근은 보안의 입법적 제약으로 인해 심하게 제한됨) DEELSA에 의해 OECD에 의한 거시적 접근의 준비가 조사되고 있음.

이러한 영역에서 심의의 최종적 활동은 국가기관과 STD (OECD를 대신하여)간의 양자적 토론 시작임. 이러한 논의들은 SDMX와 같은 프로젝트 또는 국제기구와의 토론에 대해 contact person을 국가기관이 지정함에 의해서 촉진되어질 수 있음.

〈부록 IV〉 OECD 통계에 대한 품질 프레임워크 (Quality Framework for OECD Statistics)

■ 배경

OECD 통계의 질 개선은 현재 OECD 통계전략의 가장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임 통계자료에 품질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많은 작업이 최근에 행해졌고 IMF, Eurostat와 다른 국가통계청은 다양한 자료의 품질 구성요소를 밝혀내고 품질 프레임워크(quality framework)를 채택함

2002년 OECD의 질 개선 과제(quality initiatives).

- 급박한 질 문제를 밝힐 technical meeting을 조직.
- 개별적인 업적관리(Performance Management) 목적에 질 관련 작업을 포함.
- 자료 질 문제에 대한 직원 세미나, 훈련과정, 연습 프로그램 조직
- 자료 수집, 관리와 배포에 있어 모범 관행을 밝히고 촉진시킴.
- 통계생산품의 카탈로그를 개선하고 SourceOECD의 개선을 위한 통계 지침 실행.
- 시계열(reference series)을 포함하는 실제적인 OECD 자료 저장고(warehouse)를 만들.
- OECD의 인트라넷과 인터넷에 “자료 품질”사이트를 만들.

공통적 프레임워크(quality framework)은 진행중인 품질문제를 밝히고 해결함에 있어 체계적 매커니즘을 제공할 것이며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에 보다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음. 공통적 품질 프레임워크 개선을 위한 품질 프레임워크 태스크포스가 조직됨.

○ 프레임워크의 네 개 요소:

- 질과 질의 차원에 대한 정의
- 제안된 새로운 통계 활동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 규칙적으로 현재 통계활동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 통계 생산과정의 모든 면을 포함하는 내부 질 지침

■ 데이터 품질의 정의 및 차원

품질은 사용자 필요의 관점에서 “사용자 적합성(fitness for use)”으로 정의됨 이러한 정의는 질이 정확성과 동일시되었던 과거보다 더 넓은 정의임. 비록 자료가 정확해도 너무 늦게 생산되어 이용할 수 없거나, 쉽게 접근할 수 없다면 품질이 좋다고 할 수 없음. 사용자, 필요, 우선 순위에 의존하는 질의 특징은 사용자 그룹에 따라 다양함.

- 태스크 포스가 파악한 질의 8개 차원

1) 적절성 (Relevance)

생산자료(data products)의 적절성은 자료에 의해 기여된 가치(value)의 질적 평가임. 가치는 이용자에 의해 추구된 목적을 설명하는데 자료가 기여하는 정도에 의해 특징 지어짐.

적절성을 측정하는 것은 이용자 집단과 그들의 필요를 밝혀 내는 것을 요구하며 다양한 이용과 이용자가 있고 이는 시간에 대해 변화할 것임. 적절성은 이용자의 견해를 결정하는 적절한 과정이 있는지를 확인함에 의해 간접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II) 정확성(Accuracy)

자료의 정확성은 자료가 측정하고자 한 특징이나 양을 정확하게 평가 또는 서술하고 있는 정도임. 정확성은 제공된 가치와 (알려지지 않은) 진정한 가치와의 밀접함을 의미함.

정확성의 한 측면은 확정치와 초기에 공표된 가치의 근접성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1) 뒤에 발표된 것으로 잠정적 원시자료 대체 2) 원시자료로 판단적 projection의 대체 3) 정의 또는 평가절차에 있어서 변화 4) 불변가격 값에 대한 기준년 최신화의 개정이 가능. 수정이 없다는 것이 반드시 자료가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III) Credibility (신뢰성)

생산자료의 신뢰성은 이용자들이 자료생산자에 대한 그들의 이미지에, 예를 들면 브랜드 이미지처럼, 근거해서 생산품에 대해 갖는 믿음(confidence)임. 중요한 측면은 자료의 객관성에 대한 믿음으로 이것은 자료가 적절한 통계기준과 일치해서 전문적으로 생산된다고 인식하고 정책과 절차가 투명하다는 것을 함축. 예를 들면 자료는 조작되지 않고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공표가 조정되지 않는다는 것임.

신뢰성은 생산절차의 Intergrity(완전성)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되어짐. UN 공식통계원칙에는 '공식통계에 있어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통계기관은 수집, 처리, 저장 통계자료의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 과학원칙과 직업윤리를 포함하는 엄격하게 직업적 고려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술.(원칙2)

IV) 시의성 (Timeliness)

생산자료의 시의성은 자료가 서술하는 사건 또는 현상과 그것의

이용가능성 사이의 시간의 길이를 반영하는데 ,정보가 가치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작용될 수 있는 시간의 맥락에서 고려되어야함.

V) 정시성 (Punctuality)

생산자료의 정시성은 간행(공표) 일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자료가 그것에 따라 공표되는 정도를 반영함. 간행일정은 일련의 목표공표날짜로 구성되어지며 또한 자료를 받고부터 서술된 기한 내에 자료를 공표할 의무를 포함.

VI)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자료의 접근가능성은 자료가 소유하고 있는 자료에서 얼마나 쉽게 찾아질 수 있는지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지를 반영함. 다른 이용자들의 범위는 다양한 공표 형식과 선택적인 metadata의 presentation과 같은 고려를 하게 하며 접근가능성은 자료 형태의 적합성, 공표 수단, metadata의 이용가능성 그리고 이용자지원 서비스를 포함함. 또한 접근가능성은 자료가 이용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에 접근하는지를 이용자가 알 수 있는 합리적 기회를 가지는 지 여부와 그것의 가격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에게 자료의 이용가능성(affordability)을 포함.

VII) 해독가능성 (Interpretability)

해독가능성은 이용자가 자료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고 분석할 수 있는 용이함을 반영. 개념, 목표 모집단(population), 변수들 그리고 용어 정의의 적절함과 자료의 한계를 설명하는 정보가 주로 해독가능성의 정도를 결정함.

통계처리가 분산적으로 수행되는 OECD의 맥락에서 서로 다른 공표 매커니즘의 공존은 이용자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축소

되어야 함. 더 나아가 다른 이용자들을 위해 대체가능한 정의가 있는 경우 사무국은 이용자들이 그들의 필요에 가장 적절한 정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Ⅷ) 정합성(Coherence)

정합성은 자료가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상호간에 일치하는 정도를 반영함. 정합성은 같은 용어가 다른 자료 항목 또는 개념의 사용을 위해 설명없이 사용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용어가 같은 개념이나 항목을 위해 설명없이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결과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론에 있어 변수들은 설명없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함축함. 가장 넓은 의미에서 정합성은 자료가 “적어도 조화할 수 있는” 것을 함축함.

- 정합성의 네 개의 중요한 하위차원

- 데이터셋(Dataset) 내의 정합성 : 기초적 자료 항목들은 양립될 수 있는 개념들, 정의, 분류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과 의미있게 조합될 수 있음을 함축.

- 데이터셋(Dataset) 정합성 : 자료가 공통적 개념, 정의, 분류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과 차이점은 설명되어지고 허락될 수 있다는 것을 함축.

예) 국민계정과 국제수지에서의 수출 및 수입의 조화

- 시간에 대한 정합성 : 자료가 시간에 대해 공통적 개념, 정의, 방법론에 기초하고 있고 다른 차이점은 설명되어지고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을 함축.
- 국가간 정합성 : 자료가 공통적 개념, 정의, 분류 그리고 방법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다른 차이점들은 설명되어지고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을 함축.

OECD 맥락에서 국가간 정합성을 보장하는 것은 기구에서 제공되는 부가가치의 주요한 소스들중의 하나임. 시간에 따른 국가간 방법론 또는 개념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 metadata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기본적인.

■ 새로운 통계활동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들

- 산출 요구 자료의 정의: 범위, 내용, 이용자들(users), 이용들(uses).
- OECD내에서 그리고 다른 국제 또는 국가기구로부터 사용 가능한 현재 자료를 평가하고 새로운 자료 요구를 밝힘.
- 통계활동의 모든 단계를 계획하고 설계.
- OECD의 내부와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현재 사용가능한 자료를 추출.
- 새로운 자료에 대한 자료수집 메커니즘의 집행.
- 자료와 메타데이터의 검증, 분석, 평가.
- 자료와 메타데이터의 공표.

■ 현재 통계적 활동의 질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

- A. 일년간의 검토와 2년에 한번 순환 주기에 대한 통계활동을 통계정책그룹(SPG)이 밝힘.
- B. 통계활동 매니저와 스테프에 의한 자기 평가, 이것은 질 문제의 요약, 질개선을 위해 요구되어지는 부가적 자원의 평가와 함께 가능한 개선사항의 우선순위 리스트를 포함함.
- C. 주요 이용자들에 의한 자기평가 리포트에 대한 코멘트와 검토
- D. SPG에 의해 임명된 전문가의 자기 평가 보고서에 대한 평가 및 검토.

- E. 모든 코멘트를 종합하고 활동 매니저와 임명된 전문가에 의해 함께 만들어지는 최종 질 보고서 준비.
- F. SPG에 의해 만들어진 보고서에 대한 토론 및 해결 그리고 적절한 director에게 보고서 전달.
- G. 선택된 질 개선 과제 initiative를 위한 자원 배당.
- H. 질개선 과제 initiative와 그것의 집행 계획에 대한 환류.

B,C,D 그리고 E 단계가 절차의 핵심. 검토의 규모 및 검토에 투자되는 자원들은 이로 인해 예상되는 이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검토 스케줄의 잠정적 발표, 절차를 시험운영하기 위한 최초의 검토기, 절차 그 자체도 매년 검토되고 조정될 것을 고려되어야 함.

■ 미래의 단계

현재 통계활동과 그리고 신규 통계활동의 질을 검토하고 보장하기 위한 절차들이 완성되면 OECD의 가장 중요한 이용자 그룹-내부의 이용자들의 관점에서 OECD 자료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질의서를 테스트하고 완성 할 것을 계획함. OECD에서 현재 Best 관행을 수집하고 서류화 하는 것으로 지침이 실제적으로 완성될 때, 새로운 또는 진행중인 통계 활동 각각에 대해 평가와 자기 진단 절차들은 시험 실시될 것임. 2003 1월에 프레임웍의 완전한 집행이 가능.

〈부록 V〉 OECD 설립협정(設立協定)

오스트리아 공화국, 벨기에 왕국, 캐나다, 덴마크 왕국, 프랑스 공화국, 독일 연방공화국, 그리스 왕국, 아이슬란드 공화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네덜란드 왕국, 노르웨이 왕국, 포르투갈 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왕국, 스위스 연방, 터키 공화국, 영국, 미합중국의 정부는 경제력과 번영이 국제연합의 목적달성, 개인의 자유의 보전 및 전반적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것임을 고려하고,

이들 나라 정부는 그들간에 발전되어온 협력의 전통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증진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들이 구주경제협력기구에의 참여를 통하여 달성한 구주의 경제적 부흥과 발전이 그러한 전통의 강화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통을 새로운 과업과 보다 폭넓은 목표에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음을 인식하며,

보다 폭넓은 협력이 세계의 여러 국민간의 평화적이고 협조적인 관계에 긴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 확신하고,

이들 나라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이들 나라 경제의 고도 지속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또한 그 국민의 경제 및 사회적인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협의·협력을 통해 이들 나라의 능력과 잠재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을 결의하며,

경제적 선진국이 경제적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를 전력을 다

하여 원조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고 믿고, 세계무역의 가일층의 확대가 각국의 경제적 발전 및 국제경제관계 개선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며,

이러한 목적을 이들 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여타 국제기구나 기관에서의 의무 또는 이들이 당사국이 되어 있는 협정에 규정된 의무와 부합하는 방법으로 추구할 것을 결의하며, 구주경제협력기구를 경제협력개발기구로 재편하기 위한 아래 규정에 합의하였다.

제 1 조

경제협력개발기구 (이하 "기구"라 함)의 목적은 다음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다.

- (a) 회원국의 재정안정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 및 고용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달성함으로써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함.
- (b) 경제적 발전도상에 있는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함.
- (c) 국제적 의무에 따라 다자간, 무차별의 기초 위에서 세계 무역의 확대에 기여함.

제 2 조

회원국은 이러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다음 사항을 수행하는데 합의한다.

- (a) 회원국의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함.
- (b) 과학, 기술분야에서 자원개발을 촉진하고, 연구를 장려하며, 직업훈련을 촉진함.

- (c) 경제 성장과 국내 및 대외적인 재정안정을 달성하고, 자국 또는 타국의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함.
- (d) 재화 및 용역의 교환과 경상지불에 대한 장애를 축소 또는 폐지하며,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유지,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함.
- (e) 기술원조의 수혜 및 수출시장의 확대 확보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 특히 이들 나라에 대한 자본공여를 통하여 개발도상에 있는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함.

제 3 조

회원국은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고, 제2조의 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 (a)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기구의 과업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기구에 제공함.
- (b) 지속적인 기초 위에서 상호 협의를 하고, 연구를 수행하며, 합의된 사업에 참여함.
- (c) 긴밀히 협력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상호 조정된 조치를 취함.

제 4 조

이 협약의 체약 당사자는 기구의 회원국이 된다.

제 5 조

기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행할 수 있다.

- (a)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는 결정을 채택함.
- (b) 회원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함.
- (c) 회원국·비회원국 및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함.

제 6 조

1. 결정 및 권고는, 기구가 특별한 경우에 전원 일치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회원국의 상호 합의에 의해 채택된다.
2. 각 회원국은 하나의 표결권을 가진다. 어느 회원국이 결정 또는 권고를 채택하기 위한 표결에 기권을 한 경우, 그 기권은 결정이나 권고를 무효화시키지 아니하며 그 결정이나 권고는 기권한 회원국 이외의 회원국에 적용된다.
3. 어떠한 결정도 어느 회원국이 그 헌법상의 요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는 해당 회원국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다른 회원국들은 당해 결정이 자국에 잠정적으로 적용되도록 합의할 수 있다.

제 7 조

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기구의 모든 규범을 제정하는 모체가 된다. 이사회는 각료회의 또는 상주대표회의로 한다.

제 8 조

이사회는 매년 각료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1인 및 부의장 2인을 지명한다. 의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

이사회는 집행위원회 및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 10 조

1. 이사회는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무총장 1인을 5년의 임기로 임명한다.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임명하는 1인 또는 그 이상의 사무차장 또는 사무차장보가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2. 사무총장은 상주대표의 회합에 의한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이사회를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기구의 다른 기관에 대하여 제안을 할 수 있다.

제 11 조

1. 사무총장은 이사회가 승인한 조직계획에 따라 기구가 필요로 하는 직원을 임명한다. 직원규칙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구의 국제적 성격에 비추어 사무총장, 사무차장, 사무차장보 및 직원은 어떠한 회원국 또는 기구외의 어떤 정부 또는 기관의 지시를 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 12 조

기구는 이사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다음 사항을 행할 수 있다.

- (a) 비회원국 또는 여타 조직에 대하여 의사를 전달함.
- (b) 비회원국 또는 여타 조직과의 관계를 설정, 유지함.
- (c) 비회원국 정부 또는 여타 조직에 대하여 기구의 활동에 참가하도록 초청함.

제 13 조

1951년 4월 18일의 파리조약 및 1957년 3월 25일의 로마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구주공동체가 기구에서 가지는 대표권은 이 협약 제 1 추가의정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 14 조

1.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하여 각기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거나 수락된다.
2. 비준서 또는 수락서는 기탁국 정부로 이에 지정된 프랑스 공화국 정부에 기탁된다.
3.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효력을 발생한다.
 - (a) 1961년 9월 30일전에는 모든 서명국이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한 일자.
 - (b) 1961년 9월 30일에는 그 일자까지 15개국 또는 그 이상의 서명국이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할 경우 그 서명국에 대하여 그 일자. 1961년 9월 30일 이후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하는 서명국에 대하여는 기탁한 일자.
 - (c) 1961년 9월 30일 이후 이 협약의 서명일로부터 2년 이내의 시기에는 15개 서명국이 비준서 또는 수락서의 기탁을 하였을 경우 그 기탁일자. 그 이후 그밖의 서명국에 대하여는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한 일자.
4. 이 협약 발효당시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하지 아니한 서명국은 기구와 그 서명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조건에 따라서 기구의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5 조

구주경제협력기구의 재편은 이 협약이 발효한 때에 이루어

지며, 구주경제협력기구의 목적·기관·권능 및 명칭은 그 때부터 이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주경제협력기구가 가지는 법인격은 기구에서 계속된다. 다만, 구주경제협력기구의 결정, 권고 및 결의가 이 협약이 발효한 후에도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이사회는, 회원국의 의무를 부담할 용의가 있는 어떠한 정부에 대해서도 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그 결정은 전원일치로 한다. 다만, 이사회는 특정한 경우에 기권을 인정하는 것을 전원일치로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경우의 결정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원국에 적용된다. 가입은 기탁국 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한 일자에 발효한다.

제 17 조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기탁국 정부에 대하여 12개월 전에 통보함으로써 자국에 대한 이 협약의 적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제 18 조

기구의 본부는 이사회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파리에 둔다.

제 19 조

기구의 법적 능력과 기구, 기구의 직원, 회원국 대표의 특권, 면제 및 면책은 이 협약의 제2추가협정서에서 규정된 바와 같다.

제 20 조

1. 사무총장은 이사회가 채택한 재정규칙에 따라 매년 이사회의 승인을 구하기 위하여 연간예산, 회계보고서, 이사회가 요구하는 보조예산을 제출한다.

2. 이사회가 승인한 기구의 일반경비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정된다. 그 밖의 경비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된다.

제 21 조

기탁국 정부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접수하거나 종료 통보를 받았을 경우 모든 계약당사자 및 사무총장에 대하여 이를 통보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전권위임자는 정당하게 권한의 위임을 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60년 12월 14일 파리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및 프랑스어로 된 원본 1부를 작성하였다. 협약 원본은 기탁국 정부에 기탁되고, 기탁국 정부는 모든 서명국에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영문>

Convention on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Austria, the Kingdom of Belgium, Canada, the Kingdom of Denmark, the French Republic,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Kingdom of Greece, the Republic of Iceland, Ireland, the Italian Republic,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the Kingdom of Norway, the Portuguese Republic, Spain, the Kingdom of Sweden, the Swiss Confederation, the Turkish Republic,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SIDERING that economic strength and prosperity are essential for the attainment of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the preservation of individual liberty and the increase of general well-being;

BELIEVING that they can further these aims most effectively by strengthening the tradition of co-operation which has evolved among them;

RECOGNISING that the economic recovery and progress of Europe to which their participation in the Organis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has made a major contribution, have opened new perspectives for strengthening that tradition and applying it to new tasks and broader objectives;

CONVINCED that broader co-operation will make a vital contribution to peaceful and harmonious relations among the peoples of the world;

RECONGISING the increasing interdependence of their economies;

DETERMINED by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to use more effectively their capacities and potentialities so as to promote the highest sustainable growth of their economies and improve the economic and social well-being of their peoples;

BELIEVING that the economically more advanced nations should cooperate in assisting to the best of their ability the countries in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RECOGNISING that the further expansion of world trad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avouring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ountries and the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and

DETERMINED to pursue these purpose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ir obligations in othe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or institutions in which they participate or under agreements to which they are a party;

HAVE THEREFORE AGREED on the following provisions for the reconstitution of the Organis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as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rticle 1

The aims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ereinafter called the "Organisation") shall be to promote policies designed:

- (a) to achieve the highest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and a rising standard of living in Member countries, while maintaining financial stability, and thu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world economy;
- (b) to contribute to sound economic expansion in Member as well as non-member countries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 (c)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world trade on a multilateral, non-discriminatory basi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obligations.

Article 2

In the pursuit of these aims, the Members agree that they will, both individually and jointly:

- (a) promote the efficient use of their economic resources;
- (b) in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field,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ir resources, encourage research and promote vocational training;
- (c) pursue policies designed to achieve economic growth and internal and external financial stability and to avoid

developments which might endanger their economies or those of other countries;

- (d) pursue their efforts to reduce or abolish obstacles to the exchange of goods and services and current payments and maintain and extend the liberalisation of capital movements; and
- (e) contribute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both Member and non-member countries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by appropriate means and, in particular, by the flow of capital to those countries, having regard to the importance to their economies of receiving technical assistance and of securing expanding export markets.

Article 3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aims set out in Article 1 and to fulfilling the undertakings contained in Article 2, the Members agree that they will:

- (a) keep each other informed and furnish the Organisation with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accomplishment of its tasks;
- (b) consult together on a continuing basis, carry out studies and participate in agreed projects; and
- (c) co-operate closely and where appropriate take co-ordinated action.

Article 4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is Convention shall be Members of the Organisation.

Article 5

In order to achieve its aims, the Organisation may:

- (a) take decisions which,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shall be binding on all the Members;
- (b) make recommendations to Members; and
- (c) enter into agreements with Members, non-member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rticle 6

1. Unless the Organisation otherwise agrees unanimously for special cases, decisions shall be taken and recommendations shall be made by mutual agreement of all the Members.
2. Each Member shall have one vote. If a Member abstains from voting on a decision or recommendation, such abstention shall not invalidate the decision or recommendation, which shall be applicable to the other Members but not to the abstaining Member.
3. No decision shall be binding on any Member until it has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its own constitutional

procedures. The other Members may agree that such a decision shall apply provisionally to them.

Article 7

A Council composed of all the Members shall be the body from which all acts of the Organisation derive. The Council may meet in sessions of Ministers or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Article 8

The Council shall designate each year a Chairman, who shall preside at its ministerial sessions, and two Vice-Chairmen. The Chairman may be designated to serve one additional consecutive term.

Article 9

The Council may establish an Executive Committee and such subsidiary bodies as may be required for the achievement of the aims of the Organisation.

Article 10

1. A Secretary-General responsible to the Council shall be appointed by the Council for a term of five years. He shall be assisted by one or more Deputy Secretaries-General or Assistant Secretaries-General appointed by the Council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Secretary-General.

2. The Secretary-General shall serve as Chairman of the Council meeting at sessions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He shall assist the Council in all appropriate ways and may submit proposals to the Council or to any other body of the Organisation.

Article 11

1. The Secretary-General shall appoint such staff as the Organisation may require in accordance with plans of organisation approved by the Council. Staff regulations shall be subject to approval by the Council.
2. Having regard to the international character of the Organisation, the Secretary-General, the Deputy or Assistant Secretaries-General and the staff shall neither seek nor receive instructions from any of the Members or from any Government or authority external to the Organisation.

Article 12

Up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Council may determine, the Organisation may:

- (a) address communications to non-member States or organisations;
- (b) establish and maintain relations with non-member States or organisations; and
- (c) invite non-member Governments or organisations to participate in activities of the Organisation.

Article 13

Representation in the Organisat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stablished by the Treaties of Paris and Rome of 18th April, 1951, and 25th March, 1957, shall be as defined in Supplementary Protocol No. 1 to this Convention.

Article 14

1. This Convention shall be ratified or accepted by the Signatori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2.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shall be deposited with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hereby designated as depositary Government.
3. This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 (a) before 30th September, 1961, upon the deposit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by all the Signatories; or
 - (b) on 30th September, 1961, if by that date fifteen Signatories or more have deposited such instruments as regards those Signatories; and thereafter as regards any other Signatory upon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 (c) after 30th September, 1961, but not later than two years from the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upon the deposit of such instruments by fifteen Signatories, as regards those Signatories; and thereafter as regards any other Signatory upon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4. Any Signatory which has not deposited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when the Convention comes into force may take part in the activities of the Organisation upon conditions to be determined by agreement between the Organisation and such Signatory.

Article 15

When this Convention comes into force the reconstitution of the Organis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shall take effect, and its aims, organs, powers and name shall thereupon be as provided herein. The legal personality possessed by the Organis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shall continue in the Organisation, but decisions, recommendations and resolutions of the Organis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shall require approval of the Council to be effective after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Article 16

The Council may decide to invite any Government prepared to assume the obligations of membership to accede to this Convention. Such decisions shall be unanimous, provided that for any particular case the Council may unanimously decide to permit abstention, in which case,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6, the decision shall be applicable to all the Members. Accession shall take effect upon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depositary Government.

Article 17

Any Contracting Party may terminate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o itself by giving twelve months' notice to that effect to the depositary Government.

Article 18

The Headquarters of the Organisation shall be in Paris, unless the Council agrees otherwise.

Article 19

The legal capacity of the Organisation, and the privileges, exemptions, and immunities of the Organisation, its officials and representatives to it of the Members shall be as provided in Supplementary Protocol No. 2 to this Convention.

Article 20

1. Each year, in accordance with Financial Regulations adopted by the Council, the Secretary-General shall present to the Council for approval an annual budget, accounts, and such subsidiary budgets as the Council shall request.
2. General expenses of the Organisation, as agreed by the Council, shall be apportioned in accordance with a scale to be decided upon by the Council. Other expenditure shall be financed on such basis as the Council may decide.

Article 21

Upon the receipt of any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or of any notice of termination, the depositary Government shall give notice thereof to all the Contracting Parties an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Organisatio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duly empowered, have appended their signatures to this Convention.

DONE in Paris, this fourteenth day of December, Nineteen Hundred and Sixty, in the English and Frenc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a single copy which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epositary Government, by whom certified copies will be communicated to all the Signatories.

〈부록 VI〉 OLISnet 관련 규정

1. 수록된 정보는 OECD의 지적소유권임.
2. 이용자는 사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3. 「OECD로부터 공식적으로 허락받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정보를 줄 수 없음.」
4. OECD는 회원국 정부기관 가입자가 제3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허가권리가 있음. 이 경우 제3자도 이 규약에 따라야 함.
5. 이용시에는 "Source: OECD, Paris"라고 명시하여야 함.
6. OECD는 수록된 자료 및 문서의 오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7. OECD는 문서, 자료, 코드, 분류, 주기 및 수록기간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또한 서식변경 권리도 보유하고 있음.
8. OECD는 이 규약 조건을 검토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리와 언제든지 가입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
9. 이 계약서에 서명후, 이용자는 이용자코드와 Password를 받게 됨.
10. OECD는 장애나 지연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 경우 재정적 부담은 없음.
11. 이용자는 통신시설을 통하여 OLIS를 접근하기 위한 모든 법적·기술적 요구조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음.
12. 이용자가 이 규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OECD와 이용자간 신속한 협의가 필요. 그러나 OECD는 사전 통보없이 정보제공의 중단과 적절한 보상을 받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
13. 가입은 2년 동안 유효하며 해지하지 않는 한 2년마다 자동 갱신됨.

국제기구 또는 비회원국가의 공무원은 OLIS Solutions에 직접 가입신청서를 보내거나 OECD web 상에서 이용가능한 전자가입신청서를 완성제출해야 한다.

<OLISnet 규정 영문>

Conditions

The OECD shall furnish the OnLine Information Services and shall authorise the Subscriber to make use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on the OECD OnLine Information Services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1. All proprietary rights and authors rights in OECD information contained on the OECD OnLine Information Services shall remain the property of the OECD which shall have the sole right, subject to the authorisations granted pursuant to these conditions, to reproduce the same in whole or in part for sale or to place them at the disposal of third parties.
2. The Subscriber shall make no use of the information provided via the OECD OnLine Information Services other than the intended use indicated overleaf.
3. The Subscriber shall not, excep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4, provide third parties with information contained on the OECD OnLine Information Services, unless so authorised by the OECD in writing.
4. The OECD authorises a Subscriber from a government agency of an OECD Member country to provide a third party from a government agency of the same OECD Member country, with the information contained on the OECD OnLine Information Services. The use of the information

by the third party shall b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apply to the Subscriber.

5. The Subscriber agrees to acknowledge the source of OECD information as follows: Source: OECD, Paris (followed by the year of publication) in any public or commercial document, report or paper reproducing OECD information, or in any description of studies or computations based on the use of such information.
6. The OECD is not responsible for inaccuracies or errors contained in the information provided to the Subscriber, or for errors or omissions in the documentation relating to this information.
7. The OECD reserves the right to make changes to the documents, data, codes classifications, periodicity and series coverage. The OECD also reserves the right to change the format of the information provided to the Subscriber.
8. The OECD reserves the right to review and change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information is supplied and to terminate part or all of a subscription at any time.
9. Upon signature of this contract, OECD shall issue to the Subscriber a usercode and a private, confidential password to be us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contained in the OECD OnLine Information Services User Manual. The usercode and password enable the Subscriber to obtain access to the OECD OnLine Information Services

and to use the services so provided. The Subscribe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use of the usercode and password and any unauthorised use thereof shall engage the Subscriber liability under the provisions of Condition 12 hereinafter.

10. The OECD will make every reasonable effort to maintain online access without interruption, delay or disturbance, but shall not assume any financial liability in this respect.
11. The Subscriber shall be responsible for making the necessary arrangements and for complying with all legal and technical requirements for accessing the OECD OnLine Information Services via communication facilities.
12. In case of breach of any of the clauses contained herein by the Subscriber, there will be immediate consultations between OECD and the Subscriber. However, OECD reserves the right to discontinue without prior notice the supply of information and to seek appropriate compensation.
13. This subscription shall become effective for a period of two years and shall be renewed automatically for two year periods unless terminated.

Officials of International Organisations or non-Member countries should submit this subscription form directly to OLIS Solutions or complete the electronic subscription form available on the OECD Web site (www.oecd.org/olisnet.htm).

참 고 문 헌

- 통계청(1995) 『OECD 통계의 국내작성 현황』
- 통계청(1998) 『OECD통계 종합개발계획』
- 통계청(1999) 『통계조정업무와 통계법』
- 통계청(2001) 『OECD 국가의 주요통계지표』
- 통계청(2002) 『제50차 유럽통계기관장회의 및 OECD통계기관장회의 참가보고서』
- 강인수의 5명, 『OECD, ITU, APEC 등 국제기구의 정보통신 분야 요구통계조사 및 작성체계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경제기구과(2001), 『OECD 개황』
- 윤창인(1995), 『OECD 통계활동 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장영식(2001), 『OECD 통계생산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원